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덴마크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덴마크(The Kingdom of Denmark)
면적	42,951 km ² (자료원 : 덴마크 통계청, 2022 기준)
수도	코펜하겐(Copenhagen)
민족(인종)	
언어	공용어: 덴마크어 / 상용어: 영어
종교	덴마크 루터복음교(Danish National Lutheran Church) 74.7%, 이슬람교 5.5%, 기타(카톨릭, 정교회, 유대교, 불교, 종교없음 등) 19.8%
기후	연중 바람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기후 변화가 심함. 평균 기온: 0.8℃(1월), 19.5℃(7월) 연평균 강우량은 765mm이며 강우가 있는 날은 연간 약 171일
국가원수	○ 국가 원수: H.M.Queen Margrethe II ('72.1월 즉위) ○ 총리: Ms. Mette Frederiksen (사회민주당, '19.6월~)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59-03-11 (자료원 :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상표의 상호 등록에 관한 협정	1961-03-09	상표의 상호 등록	
특허권 상호 부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63-10-11	특허권 상호 부여 및 보호	
사증 면제 협정	1969-09-05	사증 면제	
개발 차관 협정	1969-12-04	개발 차관	
국제 운수에 관한 선박 및 항공기 운항 상호 면세 협정	1975-09-18	국제 운수에 관한 선박 및 항공기 운항 상호 면세	
이중 과세 방지 협정	1979-01-07	이중 과세 방지	
해운 협정	1980-01-09	해운산업	
재입국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1987-04-02	재 입국 사증 면제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1988-06-02	투자 보장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2011-09-01	사회보장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협정	2012-10-09	녹색성장동맹 수립	
한-덴마크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2011-01-01	관광 기간중 부수적인 활동으로 취업가능 양해각서	

한국교민 수

700 명 (자료원 : 외교부 / 2021년)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한국과 덴마크는 지난 2012년 녹색성장동맹을 체결하여,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한-덴마크 정상회담 개최 (6.29)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현지기준 29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핵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같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정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덴마크가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만큼 양국 간 협력이 에너지·환경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해상풍력 및 친환경 해운 분야의 양국 간 상호 투자와 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환영하고, 앞으로 동 분야에서 협력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의 지원도 계속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움직임을 포함한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프레데릭센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덴마크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프레데릭센 총리의 한국 방문을 초청하면서,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덴마크 보건부 장관과보건의료분야 협력 논의(8.29)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29일(월) 서울서 마우누스 호이니크(Magnus Heunicke) 덴마크 보건부 장관과 코로나19 대응경험을 포함하여, 만성질환스마트 병원 등 양국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으로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감염병 등장을 대비해야 할 시점에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한국을 방문한 덴마크 보건부 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양국은 지난 2013년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보건의료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 등 변화하는 환경과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감염병 대응 협력 필요성 증가 등을 반영하여 2021년 3월 보건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한 바 있다.

* (주요 협력분야) 감염병 대응(팬데믹, 항균제내성 등), 보건의료 협력(일차 보건의료 전달체계 등), 보건산업 협력(e-헬스, 원격의료, 제약의료기기 정책 등),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커뮤니티케어 등) 등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방역전략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기일 차관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한국은 바이러스의 변이 양상에 맞는 신속한 정책을 마련하고 백신·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마우누스 장관 역시 변이 특성에 맞는 신속한 정책 변경의 필요성과, 미래의 변이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양국은 또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저출생과 관련하여, 양국은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교육·일자리·주거 등 사회 전반적으로 다층적 정책이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마우누스 호이니크 장관은 8월 29일(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스마트 병원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만성질환과 환자 참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어서 8월 30일(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만성질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밖에 양국은 항균제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에 대해서도 논의를 나누었다.

마우누스 장관은 덴마크 주도로 중·저소득 국가 대상 항생제 내성 문제 지원을 위해 설립한 "국제 항균제내성 솔루션 센터(ICARS*)"를 소개하고, 한국 측에 협력을 제안하였다.

이기일 차관은 한국 역시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며, 덴마크 측의 제안에 대해 관심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차관은 “한국전쟁 이후 덴마크의 지원으로 설립한 중앙의료원*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모하여 한국 감염병 대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는 보건의료분야 국제공조의 좋은 사례로, 향후에도 양국 간 보건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제

한국과 덴마크의 경제교역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18억 달러 규모로 (수출 744 백만 달러, 수입 1,070 백만 달러) 한국의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편이나, 덴마크는 신재생에너지, 선박, 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서 한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덴마크는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유럽의 물류 허브인 독일과 네덜란드를 통한 간접수출 비중이 높아 실제 한국제품의 수출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의 對덴마크 직접 수출품목 중 선박의 비중이 높으나, 선박의 인도시점에 따라 매년 수출액의 변동이 큰 편이다. 2021년에는 187 백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선박 인도물량이 없어 선박 수출은 전무하다. 이외에 자동차, 특히 최근 들어 전기자동차의 수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며 덴마크의 전기자동차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對덴마크 수입품목으로는 의약품과 가축육류 품목이다.

덴마크는 당뇨, 비만약 세계 1위 기업인 노보노디스크 등 덴마크는 의료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 돼지육류 수출국가이기도 하다.

최근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녹색성장 정책의 시행으로 해상풍력 강국인 덴마크와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덴마크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해상풍력 단지 프로젝트에 참가 또는 참가예정으로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문화

덴마크가 한국과 외교관계 수립 이전인 1951년에 인도적 지원 일환으로 병원선 ‘유틀란디아’호를 파견해 한국전쟁서 다친 군인과 민간인을 치료하였으며, 덴마크의 전설적 가수 김 라슨은 대중가요 ‘유틀란디아’를 불러 덴마크인에게도 유틀란디아호는 익숙한 단어이다. 한국인에게는 어릴 때부터 안데르센 동화를 통해 덴마크를 간접적으로 접하는 등 덴마크는 문화적으로 친숙한 국가이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무용가·영상예술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유명한 작가로는 노르웨이 태생의 루드비 홀베르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철학자 겸 신학자였던 쇠렌 키에르케고르가 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로는 1917년의 헨리크 폰토피단과 1944년의 요한네스 V. 옌센이 있다. 덴마크 왕립 발레단은 19세기에 아우구스트 부르농빌이 안무를 맡음으로써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덴마크 내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나, K뷰티 제품 및 K-Pop 관련 상품이 덴마크 시장에 진출하면서 점차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코펜하겐 대학의 한국학과와 인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BTS 등 K-Pop을 좋아하는 계층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로 K-Pop뿐만 아니라 K-뷰티 및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식품을 찾는 현지인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 식품의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	2	2.1	-2.1	4.1	
명목GDP (십억\$)	356.9	350.1	352.2	392.6	
1인당 GDP (PPP, \$)	57,924.1	60,378.9	58,932.8	61,478.4	
1인당 명목 GDP (\$)	61,731.1	60,299.6	60,494.2	67,218.2	
정부부채 (% of GDP)	33.8	33	43.4	41.6	
물가상승률 (%)	0.7	0.7	0.3	1.1	
실업률 (%)	5.1	5	5.6	5.6	
수출액 (백만\$)	109,693	111,079	108,453	125,928	
수입액 (백만\$)	102,750	98,187	98,296	120,290	
무역수지 (백만\$)	6,943	12,892	10,157	5,638	-
외환 보유고 (백만\$)	70,507	65,683	72,792	81,210	
이자율 (%)	-0.65	-0.75	-0.6	-0.6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6.32	6.67	6.53	6.29	

〈자료원 : IMF, GTA, 덴마크 중앙은행〉

나. 경제 동향

덴마크 경제는 코로나 19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2021년 4분기 GDP 성장률이 3%에 이르는 등 2022년에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생산 제한과 높은 인플레이션, 소비 위축으로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였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총 수요를 위축시키게 되었다. 2021년 민간 소비가 4.2% 증가한 반면, 2022년에는 1.7%로 하락할 전망이다.

동시에 전쟁으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는 무역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았던 자재 부족으로 건축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일부 건설활동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덴마크는 현재 천연가스 요구량의 75%를 북부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그 일부는 러시아로부터 유입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경기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완전고용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며, 높은 임금상승률과 함께 향후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덴마크도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전반적인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물가는 매년 평균 0.8%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최근 40년만의 최고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는 6.7% 상승하였고, 이는 주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경제회복 (서비스 산업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부정적인 요인이 복합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 경제 전망

덴마크는 2022년 2월부터 모든 코로나 관련 규제를 해제하였고 이는 덴마크의 경제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 차질과 높은 에너지 가격을 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여건 긴축에 기여하고 있어 성장 전망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표는 긍정적인 기본 성장 역학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적으로 건전한 가계, 낮은 실업률로 반영된 긍정적인 노동시장 발전은 강력한 펀더멘털을 입증한다. 전반적으로 실질 GDP는 2022년에 주로 내수(민간 소비와 투자 모두)에 의해 주도되고 순수출에 의한 약간의 긍정적인 기여로 3.0% 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에는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중단이 가시화되면서 GDP 성장을 하향 조정 가능성은 더 높은 상황이다.

덴마크는 직접적으로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낮은 편이지만 독일 의존적인 경제 구조로 인해 러시아 가스중단으로 인한 독일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덴마크 경제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Special Categories	17,173,603,929
2	독일	16,794,407,942
3	스웨덴	11,876,981,468
4	미국	9,087,131,673
5	영국	7,517,381,678
6	노르웨이	6,608,966,375
7	네덜란드	5,023,170,248
8	중화인민공화국	4,512,709,178
9	프랑스	3,951,289,504
10	폴란드	3,347,790,494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Special Categories	19,349,648,267
2	독일	15,939,967,451
3	스웨덴	11,546,033,793
4	미국	11,346,636,709
5	영국	6,900,961,646
6	노르웨이	6,700,577,595
7	네덜란드	5,694,775,535
8	중화인민공화국	5,412,999,094
9	프랑스	3,867,704,758

10	폴란드	3,608,378,550
----	-----	---------------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Special Categories	21,580,776,516
2	독일	14,536,435,501
3	미국	11,652,956,979
4	스웨덴	10,083,954,725
5	네덜란드	6,569,744,631
6	노르웨이	6,488,860,544
7	중화인민공화국	6,048,242,279
8	영국	5,584,876,506
9	프랑스	4,080,650,721
10	폴란드	3,975,933,590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23,028,006,627
2	스웨덴	12,042,389,946
3	네덜란드	8,040,373,218
4	중화인민공화국	7,842,212,493
5	노르웨이	5,203,388,318
6	폴란드	4,225,232,532
7	영국	3,730,902,200
8	이탈리아	3,390,041,109
9	프랑스	3,361,562,764
10	벨기에	3,042,508,842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21,185,663,746
2	스웨덴	11,681,675,519
3	네덜란드	7,774,537,968
4	중화인민공화국	7,373,501,266
5	폴란드	4,116,283,233
6	노르웨이	4,104,996,971
7	영국	3,697,167,256
8	미국	3,351,551,143
9	프랑스	3,311,726,475
10	이탈리아	3,271,710,759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21,682,112,734
2	스웨덴	12,223,808,699
3	네덜란드	8,297,727,437
4	중화인민공화국	7,984,772,934
5	폴란드	4,461,815,816
6	영국	3,548,767,312
7	프랑스	3,380,978,132
8	이탈리아	3,349,638,242
9	벨기에	3,253,487,866
10	노르웨이	3,206,052,398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2,003,047,146
2	300490	기타	7,469,682,899
3	300439	기타	4,768,116,651
4	300431	인술린을 함유한 것	2,281,928,437
5	271019	기타	2,102,300,009
6	850231	풍력의 것	1,797,797,242
7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246,047,017
8	350790	기타	1,241,481,018
9	293712	인술린과 그 염	1,196,908,070
10	841290	부분품	1,144,873,950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4,232,883,367
2	300490	기타	7,693,289,554
3	300439	기타	6,756,452,902
4	850231	풍력의 것	3,066,887,808
5	300431	인술린을 함유한 것	2,387,923,013
6	271019	기타	1,876,400,565
7	841290	부분품	1,723,490,014
8	293712	인술린과 그 염	1,468,317,439
9	020329	기타	1,448,174,217
10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319,232,676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5,351,642,875
2	300490	기타	7,843,176,362
3	300439	기타	7,777,013,752

4	850231	풍력의 것	2,127,763,315
5	300431	인술린을 함유한 것	2,029,804,883
6	020329	기타	1,768,624,297
7	293712	인술린과 그 염	1,501,617,320
8	350790	기타	1,331,149,972
9	293719	기타	1,229,631,716
10	010391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1,073,650,251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9019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3,398,491,310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573,134,500
3	271019	기타	2,564,910,723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391,332,577
5	300490	기타	2,242,437,028
6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401,437,228
7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194,341,094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023,043,466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02,543,950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883,242,557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2,549,378,170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419,275,434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155,018,187
4	300490	기타	2,077,098,106

5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392,575,774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138,013,487
7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116,134,646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83,694,762
9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879,974,732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828,948,809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2,545,910,494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020,097,089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520,151,834
4	271019	기타	1,373,490,311
5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292,975,018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181,622,281
7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146,331,215
8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046,326,768
9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901,861,139
10	300439	기타	805,048,081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1,094	793	301
2019	448	893	-445
2020	439	936	-497
2021	744	1,070	-326
2022	327	681	-35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6131	중후판	8	0	8
2	7414	전기자동차	124	0	124
3	7419	기타자동차	0	0	-1
4	7463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31	7	24
5	2140	합성수지	26	0	25
6	2262	의약품	102	155	-53
7	6152	철구조물	21	2	19
8	7411	승용차	69	0	68
9	0417	대구	11	0	10
10	3203	타이어	10	0	9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6131	중후판	71	0	71
2	7414	전기자동차	36	0	36
3	7419	기타자동차	24	0	24
4	7463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23	4	19
5	2140	합성수지	22	0	22
6	2262	의약품	17	124	-107
7	6152	철구조물	13	0	13
8	7411	승용차	12	0	12
9	0417	대구	8	0	8
10	3203	타이어	6	0	6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62	의약품	102	155	-53
2	0221	가축육류	0	120	-121
3	7512	밸브	3	44	-42
4	4490	기타섬유제품	1	50	-50
5	7112	펌프	4	44	-40
6	0245	단백질류	0	27	-27
7	0243	낙농품	0	43	-43
8	0242	꿀및로알제리	2	36	-35
9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4	27	-23
10	8151	계측기	1	21	-2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62	의약품	17	124	-107
2	0221	가축육류	0	59	-59
3	7512	밸브	2	34	-32
4	4490	기타섬유제품	1	30	-29
5	7112	펌프	3	29	-26
6	0245	단백질류	0	29	-29
7	0243	낙농품	0	25	-25
8	0242	꿀및로알제리	2	22	-20
9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2	18	-16
10	8151	계측기	1	16	-1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화장품		
HS Code	330499	수입액('21/US\$백만)	298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5.2
선정사유	K-뷰티로 젊은 여성 소비계층 관심 증가 마스크팩을 중심으로 한국산 화장품 바이어 증가 대한국 수입액이 매년 거의 2배씩 증가추세 ('21년 대한국 수입증가율 40.8%)		
시장동향	자연, 천연 성분 위주의 제품 주로 구매 에코라벨, 인증서 필수		
경쟁동향	글로벌 & 덴마크 자생 브랜드 시장 장악, 높은 진입 장벽 유튜브 K-뷰티 제품 소비자 증가 기회		
진출방안	EU CPNP 등록, RP(Responsible Person) 선정 선결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마케팅 필요		

품목명 2	의료기기		
HS Code	901890	수입액('21/US\$백만)	337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2.2
선정사유	덴마크는 고령화 사회로 변화 중 한국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인지도 확대 ('21년 대한국 수입증가율 14.9%)		
시장동향	준 자동화 수준의 의료기기가 대다수 새로운 치료에 대한 신규 의료기기 수요 다대		
경쟁동향	덴마크 내 법인 설립 또는 벤더와 파트너링을 통한 간접조달 필수		
진출방안	유력 벤더와 파트너십 체결 전문가 공동 연구, 신제품 세미나 및 임상실험 프로젝트 추진		

품목명 3	도자제 주방용품		
HS Code	691200	수입액('21/US\$백만)	42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4.0
선정사유	덴마크 내 도자제 주방용품 수입 매년 증가 추세		
시장동향	여유로운 경제 수준을 가진 덴마크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라도 좋은 품질의 식탁 및 주방용품 구매 의향이 높음 도자기로 만들어진 주방용품 인기 상승		

경쟁동향	중국에서의 수입이 전체 수입규모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저가시장 제품 2021 기준 한국이 도자제 주방용품 수입국 2순위에 상승하였으며, 독일, 스웨덴, 포르투갈 순
진출방안	품질 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덴마크인들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 고려

품목명 4	전기차 충전기기		
HS Code	850440	수입액('21/US\$백만)	458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0.1
선정사유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시장확대 전기차 충전소 확충 계획		
시장동향	전기차 보급률 속도보다 늦은 충전소 확충 지자체에서는 충전소 보급을 위한 계획 마련 중		
경쟁동향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제품과 유럽제품이 경쟁		
진출방안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장진출 A/S 제공을 위한 현지 파트너 보유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스마트 재활용 시스템
선정사유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으로 재활용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동향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주된 관심사로 특화된 솔루션 개발 중
경쟁동향	자동화, 데이터 처리 등에 대한 수입 증가
진출방안	덴마크의 센서 기술과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술 결합으로 진출 가능

품목명 2	문화·창의 콘텐츠
선정사유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으로 덴마크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동향	넷플릭스 내 한국 드라마 및 k-pop 인기
경쟁동향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있는 덴마크인이 많음
진출방안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행사 개최 및 한국 창의 콘텐츠 수출

품목명 3	전기차 A/S
-------	---------

선정사유	덴마크 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A/S 수요도 증가 전망
시장동향	전기차는 확대 추세이나 A/S 시장은 아직 발달이 미미함
경쟁동향	-
진출방안	직접 진출보다는 덴마크 내 로컬 서비스 센터와 기술 협력 을 통한 진출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산 마리노,모나코,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1.12)
EU-EEA FTA	EU, EEA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95-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04		
EU-남아공 FTA	EU, 남아공	2000-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2-04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EU-카메룬 FTA	EU, 카메룬	2009-02-28		
EU-한국 FTA	EU, 한국	2010-10-06	2011-07-01	
EU-이라크 FTA	EU, 이라크	2012-05-11	2012-08-01	무역부문만 발표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	2012-06-29		잠정 발효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2013. 8. 1.)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2013.10. 1.)과테말라(2013.12. 1.)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	2012-07-26		잠정 발효콜롬비아(2013. 8. 1.), 페루(2013. 3. 1.), 에콰도르(2017. 1. 1.)
EU-콜롬비아 FTA	EU, 콜롬비아	2012-07-28	2013-08-01	
EU-페루 FTA	EU, 페루	2013-07-28	2013-03-01	
EU-과테말라 FTA	EU, 과테말라	2013-12-01		
DCFTAA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EU-에콰도르 FTA	EU, 에콰도르	2014-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EU-SADC FTA	EU,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 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2018. 2. 4.))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협정을 대체
EU-코트디부아르 FTA	EU, 코트디부아르	2016-09-03		
EU-캐나다 FTA	EU, 캐나다	2016-10-30	2017-09-21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EU-싱가포르 FTA	EU,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진(현재 투자보호협정 비준 진행중)
EU-베트남 FTA	EU, 베트남	2018-10-19	2020-08-01	2020. 2. EU 비준 및 2020. 6. 8. 베트남 비준완료. 2020. 8. 1. 부로 FTA 발효 (현재 투자보호협정IPA는 회원국별 비준 진행 중)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중 (2017.11.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합의완료 2021. 10. EU의회,이사회 거쳐 최종 승인 계획)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 (2013.3.1 협상개시, 2019.6 재추진) 협정 현대화 추진 중 (2021.9 추진)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산 마리노,모나코,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2.7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솔로몬 제도(Pacific)	2011-05-01	2020-05-17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TIP	EU, 미국	협상중, 직전 협상 2022.5	EU-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 TTC 발족(2021.6.15)
EU-뉴질랜드 FTA	EU, 뉴질랜드	협상완료, 직전 협상 2022.6	EU-뉴질랜드 FTA 협상 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 이후 발효 예정
EU-AEAN FTA	EU, ASEAN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협정 타진 중	
EU-태국 FTA	EU, 태국	잠정 보류 상태	직전 협상 2014. 4.
EU-인도 FTA	EU, 인도	협상중, 직전 협상 2022.6	2021.5.8. 협상 재개 합의
EU-인도네시아 FTA	EU, 인도네시아	협상중, 직전협상 2021.11	
EU-필리핀 FTA	EU, 필리핀	직전 협상 2017. 2.	
EU-미얀마 FTA	EU, 미얀마	직전 협상 2016. 12.	
EU-멕시코 FTA	EU, 멕시코	2018. 4. 21. 협상 완료	비준 진행 중
EU-호주 FTA	EU, 호주	협상중, 직전협상 2022.2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 (MERCOSUR)	협상 중	직전 협상 : 2018. 7.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 개시 : 2017. 2.
Update of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협상 개시 : 2013. 10. 12.)*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EU-중국 Investment Agreement	중국	2013년 협상시작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키르기스스탄	협상완료, 직전협상 2019.6	EU-키르기스스탄 EPCA 협상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 이후 발효 예정 (2022년 내)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우즈베키스탄	협상완료, 직전협상 2022.6	

〈자료원 : EU 홈페이지〉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대 분쟁광물(2021년 1월 1일부)

콩고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해 수입금지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 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2021년 7월 3일부)

EU의 탈 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 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 막대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2021년 7월 3일부로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2015년 3.8억 톤 등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의 60% 이상이 자연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EU 지침 2019/904를 통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2019년 7월 2일 적용되었으나 2년간의 회원국 별 법령 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된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휠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 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o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 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돼야 한다. 이 인식 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o CE 마크 대리인 규정

2021년 7월 16일 유럽연합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 (EU) 2019/1020]을 채택했으며 앞으로 CE 마크가 있는 모든 상품은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책임자로서 유럽연합 내 거주하는 유럽연합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유럽연합 내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유럽연합 내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유럽연합 내 수입업체, 유럽연합 내 대리인, 유럽연합 내 배송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며, 대리인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상품의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 수집 후 유럽연합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유럽연합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별도의 문서* 제공

*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DoC), 기술문서(테스트보고서, 안전 인증서 등)

- 상품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관련 기관에 보고
-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상품의 규정 미 준수 문제 해결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중)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 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

(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 사용자, 물질 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 사전등록: 사전 등록은 등록 절차의 하나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함량과 물질 특성에 따라 3년 6개월~11년까지 본 등록이 유예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이 마감되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 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톤수 별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 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 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 정보 등과 함께 기술 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 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 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 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 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 별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물질 등록 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 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 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

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 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 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 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 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숙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 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 기업은 생산 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 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 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 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갈, 23=그리스 등

6)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 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 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2021년 5월 집행위는 기업인수와 공공조달 입찰 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정황이 발견될 시 집행위에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였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 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 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피인수기업의 EU 지역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역외 지역 인수기업의 투자

자금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인수건에 대해 EU 역외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 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 지역 내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 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3월 이사회는 일반적 접근을 채택하고 2022년 6월 의회에서 수정안을 채택한다. 이사회와 집행위의 입장은 유사하나, 의회는 과도기 / 무상 할당 폐지 시기 / 배출 범위 관련 집행위와 입장 차가 있으며, 2022년 10월 삼자 협의의 진행이 예상된다. 향후 삼자 협의를 통해 규정(안) 내용을 확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할 당국에 승인 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안의 적용대상 제품은 배출량이 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이며 유럽의회는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로 제안했다. 적용대상 제품 HS 코드 별 세부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U의 CBAM 적용 대상품목 (자료: EU 집행위)

분야	HS코드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한편, EU의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추진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이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EU 탄소국경조정세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하는 경우 유럽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를 선두로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누출이 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역외국 수출 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등 탄소배출 기준이 적은 국가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판매했던 EU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역내 공급망(GVC)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EU 공급망실사 지침 (Supply Chain Due Diligence Directive)

2020년 4월 법안 수립 계획을 밝힌 뒤, 2022년 2월 집행위 초안을 발표했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EU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 인권환경 관련 공급망 내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여 예방완화피해 구제 조치 시행의 의무화다. 이번 지침의 대상으로는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대기업, 고위험 산업군(섬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 중견기업으로 협력사와 실사준수계약 체결 등을 통해 전 공급망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및 완화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사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 또는 성명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감독기구를 지정하여 실사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위는 유럽 감독기구 연합회(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를 설립하여 감독기구 간의 협력 및 조사, 제재 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원국 별 국내법 입법 과정에서, 위반시 제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수준이 상이할 전망으로 입법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BT

기술 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 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표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 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 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 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 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 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크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 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 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 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 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완제품에 포함된 고위험 우려 물질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신고제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이 포함된 완제품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위험 우려 물질을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을 공급하는 EU 내 모든 기업은 제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SCIP 신고를 위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 10월 28일 우려 물질을 함유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SCIP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다. 따라서 신고된 물질은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echa.europa.eu/de/scip>)

5)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시행 (예정)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 Regulation(EU)2017/746]이 2017년 5월25일 발효된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5.26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IVDD: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대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유럽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없이 자가 적합성 선언 후 시판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등급 분류에 따라 유럽 공인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 (체외진단기기 유형 분류 시스템을 위험 등급에 따라, 가장 낮은 Class A에서 가장 높은 Class D로 분류, Class A 등급을 제외하고는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필수 인증 취득 필요함) 관련해 앞으로도 EU에서 판매 예정인 체외진단기기들은 엄격한 임상적 증거 제출하고 시판 뒤에도 사후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련업체는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6) 한국 인스턴트 라면류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아시아에서 수입된 인스턴트 라면 및 식물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 오염 가능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규정 (EU) 2019/1793를 개정하여 제3국 수입 식품 검역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규정 (EU) 2021/2246에 따라 부속서에 등재된 규제 대상 품목의 EU 수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선적 전 정밀검사를 통해 EU의 최대 허용 잔류 기준을 준수했다는 시험성적서와 검사 공식증명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만 한다. 시험성적서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식증명서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 EU) 2021/2246 부속서 II에 등재된 한국 대상 품목 및 수입 요건

- 규제 대상품목(CN 코드): 식물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ex 1302, 2106), 인스턴트 라면(1902 30 10)

- 수입 요건

공식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준수 여부 검사 증명서 제출

검사증명서: EU 공식증명서(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행), EO 시험성적서(국내 지정 공식검사기관 발행)

* CN 코드: CN Code는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코드

**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브뤼셀 무역관의 해외시장 뉴스 'EU, 2월 18일부로 에틸렌옥사이드가 함유된 한국산 식품에 수입강화조치 시행' 참고 요망

기타

○ 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아시아의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이다.

지난 2020년 7월 01일부터 모든 국별 쿼터를 연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고, 대규모 철강 수출자의 잔여 쿼터 접근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개정안이 발효 되었고, 해당 개정안에 따른 3차연도 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세이프가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한 EU 12개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역내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나, 2021년 6월 10일 EU 집행위는 WTO에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2021.07.01~2024.06.30)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도별 3% 중량 방식 역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EU 관세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최혜국 관세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현재 GSP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만료를 앞두고 2021년 9월 22일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집행위는 GSP 참여국이 인권·환경보호·거버넌스와 함께 이민문제 해결에 협력할 것을 개정안에 포함해 제안하고 있다. 또한 GSP 수혜국이 준수해야 할 기존 27개 협약중 6개 협약이 추가됐으며, 특혜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특혜 철회절차를 1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EU 의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승인이 되면 최종 채택 될 예정이다.

1)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 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2년 5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3) 관세동맹을 위한 액션플랜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통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

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규준수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2021년 하반기 중 추진해 AEO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위조품 등의 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동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세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관세행정 협력을 위한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021년 중 위기발생 시 대응위한 검토 그룹 설립을 추진해 관세동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2022년 1월 1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3차례 연장해 2022년 6월 30일까지 시행했다.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5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 해주는 해당 조치는 현재 EU 차원에서는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중단 되었으며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벨기에 등 5개 회원국에서만 2022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 (참고) 면제 품목 목록: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2-01/EU%20Indicative%20List%20Decision%20Covid19-C2020_491%20-%202011%20Jan%202022%20.pdf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해,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동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다.

이로써 EU는 기존 22유로 미만 저가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를 부과하고 있다. 대신 소규모 전자 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VAT 규칙을 도입해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저가 화물의 경우 IOSS (Import One Stop Shop)에 등록된 사업자, 운송 업체 및 세관 대리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VAT 신고 및 비용을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IO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VAT 및 세관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 제안

2022년 4월 27일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년간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을 제안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수입 시 쿼터제가 적용되는 농산물과, DCFTA 체결로 단계적 관세 적 관세 철폐 중에 있던 비료, 알루미늄, 자동차 등 모든 공산품에 해당 된다. 또한 EU 내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우크라이나 면제 및 우크라이나에 부과된 기존 반덤핑 관세 조치 면제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제안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제적으로 지원 하며, 동시에 역내 식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유럽 의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2년 5월 30일 채택, 2023년 6월 5일 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U 2022/870).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

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또한,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CLASS'를 2020년 5월 구축하여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유럽 위원회 무역 헬프데스크 사이트에서도 관세율을 비롯한 수출입 규정이 확인 가능하다.

- CLASS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 유럽 위원회 무역 헬프데스크 관련 링크: <https://trade.ec.europa.eu/tradehelp>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덴마크의 주요 무역항으로는 오르후스(Aarhus), 코펜하겐(Copenhagen), 프레데리시아(Fredericia) 무역항 등이 있다. 덴마크 유틀란드 반도 동해안에 위치한 오르후스 무역항은 덴마크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화물의 65% 이상, 벌크 화물의 66% 이상을 담당하는 가장 큰 항구이다. 코펜하겐 무역항은 2000년에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말뫼를 잇는 외레순드 다리가 지어진 직후인 2001년에 말뫼 무역항과 공동 운영하는 코펜하겐-말뫼 무역항(Copenhagen Malmo Port: CMP) 운영회사를 설립하였다. 프레데리시아 무역항은 덴마크 유틀란드 반도 남쪽에 위치해있으며 고속도로와 철로 모두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2021년 기준 덴마크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은 오르후스 무역항(718천 TEU), 코펜하겐-말뫼 무역항(108천 TEU), 프레데리시아 무역항(104천 TEU)이다.

◦ 국가별 물동량: 2021년 기준, 덴마크 무역항의 국가별 물동량은 독일(15,510 천톤), 스웨덴(12,962천톤), 노르웨이(8,756천톤) 등으로 인접 3국간 물동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덴마크의 국제공항은 총 4개로 코펜하겐(CPH), 빌룬드(BLL), 올보그(AAL), 오르후스(AAR)에 각각 위치해있으며 코펜하겐 공항의 규모가 가장 크고 이용 빈도가 높다. 이 외에도 국제 공항은 아니지만 국내선을 운영하는 작은 공항이 4개가 더 존재한다.

◦ 주요 공항 물동량: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코펜하겐 공항 이용 승객수는 2019년 30,299천명에서 2020년에 7,525천명으로 대폭 감소한 바 있다. 2021년 들어 코로나 규제가 일부 해제되면서 코펜하겐 공항 이용객수는 9,180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간 상승하였다.

3) 유의사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모든 방면에서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덴마크는 물류 운송 과정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석유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따라 추후 물류 운송 방식과 운송 비용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4) 기타 참고사항

덴마크는 독일과 타 북유럽국가 사이에 위치하여 잘 다져진 물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철도와 도로 운송을 통해 두 지역의 물류 이동 허브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한국에서 덴마크 또는 덴마크 인접국에 물류 이송 시 인접 국가들의 물류 연결성을 이용하여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덴마크로의 물품 운송 시 덴마크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정보를 한데 모아 놓은 홈페이지(<https://www.logisticsdenmark.com/>)를 참고할 수 있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세관 당국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하는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 법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한다.

일반적으로 통관절차는 수입 신고(입항 전 또는 직후 모두 가능) → 입항 → 하선 → 물품 보세 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심사 → 물품 검사 → 세금 납부의 순이다. EU 국가 이외에서 제품이 수입돼 덴마크 국경에 도착할 경우 운송업자는 이를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수입업자

는 제품, 원산지, 수량 등이 명기된 수입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련 서류를 문서상으로 처리했으나, EU 세관은 안전강화와 목표서류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입물품 신고의 전자처리를 의무화했다. 개정된 통관지침에 따라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통관 사실의 신고 및 통관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는 세관이 물품에 관한 정보를 숙지 가능하고 추적 가능한 상태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물품이 세관 도착 시, 전자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세관에서 바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위험조사가 그 당시에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지연된다. 통관 신고자가 이 전자세관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경우 시스템상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통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이와 동시에 부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류 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수입업자가 세관 당국에 등록돼 있다면 자신이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해 즉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며, 관세 등 세금 납부는 그 다음 달 16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반면 등록된 수입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통관 시 이를 납부해야 제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 등 세금 납부가 간편해지고 있다.

◦ SKAT(세관)

- 주소(관세 관련 우편물 송부주소): Nykøbingvej 76 Bygning 45, 4990 Sakskøbing
- 전화: (+45) 7222 1212
- 홈페이지: <https://www.skat.dk/skat.aspx?oid=2362&lang=us&x=2607>

통관 시 유의사항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 통관의 경우, 한-EU FTA 협약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Modul Transport A/S

주소	Avedøreholmen 46, 2650 Hvidovre
전화번호	(+45) 4342 6800
이메일	lj@modultransport.dk
홈페이지	http://www.modultransport.dk

◦ DSV

주소	Hovedgaden 630, DK-2640 Hedehusene
전화번호	(+45) 4320 3040
이메일	info@dsv.dk
홈페이지	http://www.dsv.com

◦ Green Carrier Freight Services Denmark A/S

주소	Skagerrakvej 7, 2150 København
전화번호	+45 4488 1020
이메일	louise.lauridsen@greencarrier.dk
홈페이지	https://freightservices.greencarrier.com/
비고	코트라 코펜하겐무역관 공동물류센터 협약기업

◦ Atlantic Integrated Freight (A.I.F)

주소	Gammel Kongevej 1, DK-1610 Copenhagen, Denmark
전화번호	+45 5263 2579
이메일	manuel.park@atlanticif.com
홈페이지	http://www.atlanticif.com/
비고	한국 포워딩 업체

<자료원 :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덴마크 외무부의 산하기관인 Invest in Denmark에서 덴마크에 투자하거나 연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요구에 맞춘 컨설팅 및 정보 수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지원 제도는 존재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덴마크 내 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는 없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덴마크 국내 기업과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법적 지위, 권리, 의무 등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덴마크 내 기업설립 등 투자진출 관련 정보는 덴마크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vest in Denmark, <https://investindk.com/>)

투자인센티브

덴마크의 투자 유치 정책은 내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을 막론하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덴마크는 해외로부터의 직접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나 외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으며 덴마크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등한 권리가 부여된다.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상 제한이 없으며 세제상으로도 동등하게 취급해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내국 기업과 동일한 법인 세율인 22%를 적용한다(2021년 기준). 이는 EU 평균 법인세율(20.7%, 2021년 기준)에 비해서는 약간 높고, OECD(23.04%, 2021년 기준)나 글로벌(23.54%) 평균세율(2021년 기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자료원: tax foundation).

덴마크 정부의 투자 장려 정책은 일반적인 장려 정책이 아닌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지역 보조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 경우에만 한해서 이루어지며, 활동 보조는 주로 수출 관련 산업과 기술 발전에 투자하는 산업 부문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안정된 경제 기반 위에서 기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로 대부분의 장려 정책은 저리의 대출 혹은 정부 보증과 같은 금융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지 당국과 협의해 저가로 토지를 제공받거나 혹은 신 공업 단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다.

참고로 오덴세를 비롯한 지방정부(Kommune, Municipality)에서는 투자진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내국 기업과 동일하게 R&D 자금 등을 지원해주거나(벤처기업일 경우) 투자가 및 상용제품 벤더를 발굴해주는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오덴세 시 정부는 오덴세 로보틱스라는 클러스터 조직을 설립하여 입주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이 시장에서 신속히 상품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파이낸싱이 가능하고 R&D 분야 내 덴마크 정부의 펀딩 제도나 인센티브 제도(세제 혜택 등)를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덴마크 정부는 R&D 자금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 세제 혜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은 R&D 자금 집행이 발생한 연도에 전부 공제를 하거나, 해당 연도를 포함해 향후 4년간 나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손실이 발생했다면, R&D 비용과 관련해 ‘연간 최대 2,500만 덴마크 크로네 x 법인세율’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덴마크 정부는 바이오테크, 제약, 생활과학, 환경, 에너지, ICT, 식품, 농업 및 운송 부문에서 특별 R&D 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 금지 분야: 덴마크는 모든 업종을 개방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분야는 없다.
- 제한 분야: 석유 시추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제한 분야가 있지만, 이것은 외국인 투자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제한분야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덴마크에는 별도의 특별경제구역과 자유무역지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별로 산업 클러스터를 일부 조성 운영하고 있다.

산업단지

○ Food & Bio Cluster Denmark

규모	회원사 363개사
위치	오르후스
임차료	회사 규모에 따라 연 1,000 덴마크 크로네에서 55,000 덴마크 크로네까지 차등적으로 멤버십 비용을 부과한다.
관할기관 및 연락처	○ 관할기관: 오르후스 지방정부 ○ 연락처: info@foodbiocluster.dk
비고	덴마크 제2의 도시 오르후스에 위치한 식품 및 생명자원 산업 클러스터로 130개 이상의 회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있다. 2020년 Danish Food Cluster에서 Food & Bio Cluster Denmark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관련 산업 분야 지식과 연구를 공유하며 파트너 연결, 네트워킹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식품 및 생명자원 산업 분야 회사들의 발전을 돕는다.

○ Odense Robotics

규모	회원사 300개사
위치	오덴세, 오르후스, 올보그, 코펜하겐, 손더보그
임차료	연 7,500 덴마크 크로네 멤버십 비용을 부과한다.
관할기관 및 연락처	○ 관할기관: 오덴세 지방정부 ○ 연락처: info@odenserobotics.dk
비고	약 25년 전 오덴세 조선소에서 SDU(South Denmark University)와 공동으로 로봇을 개발하던 것을 계기로 SDU 내 Maersk McKinney Moller Institute, DTI(Danish Technological Institute, 비영리 R&D 및 인증기관) 내 로봇센터가 설립되었다. 오덴세 조선소 폐업 조짐이 보이자, 관련된 로봇 기업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300개사가 회원사로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Danish Life Science Cluster

규모	회원사 206개사
위치	코펜하겐, 오르후스, 오덴세, 올보그, 닐뢰빙 폴스터
임차료	회사 규모에 따라 연 1,500 덴마크 크로네에서 50,000 덴마크 크로네까지 차등적으로 멤버십 비용을 부과한다.
관할기관 및 연락처	◦ 관할기관: 코펜하겐 지방정부 ◦ 연락처: bbc@danishlifescience.dk

<자료원 : www.foodbiocluster.dk, www.odenserobotics.dk, www.biopeople.eu>

주요 지역별 여건

◦ (참고) 그 외 지자체 산업 클러스터

덴마크는 대부분 공업용지를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공장부지 결정은 지자체가 하게 된다. 지자체들은 특정 지역에 서만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해당 지역 내 공장 부지는 기업 유치를 위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부지 확보의 용이성, 환경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 공장들은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코펜하겐 외곽 지역인 Glostrup, Brøndby, Ballerup 지역이 공장 설립 지역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많은 외국 기업 생산 공장 및 판매 사무소도 이곳에 설립돼 있다.

Herning 및 Ikast시를 포괄하는 지역의 섬유 디자인 산업 클러스터, Horsens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업 및 농업용 철물산업 클러스터, Esbjerg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여행 산업 클러스터, Funen 지역의 목목 산업 클러스터, 유틀란드 반도 동부를 중심으로 한 운송 산업 클러스터, 유틀란드 반도 중부를 중심으로 한 풍력발전 산업 클러스터 등이 유명하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 및 정부의 산업 정책과 산학연의 협력을 통해 특정 산업에 특화, 발전한 지역들이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3748.81	1198.49	3587.1	1151.3	-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9518.26	-369.46	11403.9	4395.34	-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10	2	4,358	11	3,206
2020	10	0	33,898	9	33,849
2021	10	2	23,364	9	55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1	1,951	1	1,943
도매 및 소매업	8	0	2,400	9	1,2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7	1	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도매 및 소매업	7	0	2,078	7	1,77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0	31,820	2	32,07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건설업	1	0	65	0	0
도매 및 소매업	1	0	352	1	223
정보통신업	7	1	330	7	330
부동산업	1	1	22,617	1	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하이에어코리아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현지 기업 Novenco A/S 인수 Johnson Controls Global Marine Service
업종	해운 부품
취급분야	환기 시스템
모기업명	Hi-Air Korea Co.Ltd

○ 셀바이오텍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현지 영업소 설립
업종	바이오텍
취급분야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모기업명	Cell Biotech

○ 삼성전자 덴마크 리서치 센터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리서치 센터 설립
업종	연구개발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

○ LS 케이블 시스템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지사
업종	케이블
취급분야	케이블
모기업명	LS산전

○ 대한전선

진출연도	2021
진출형태	지사
업종	케이블
취급분야	케이블
모기업명	대한전선

○ A.I.F

진출연도	2022
진출형태	지사
업종	물류
취급분야	기업 물류
모기업명	A.I.F

<자료원 :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A/S(주식회사)와 ApS(유한회사) 등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덴마크 기업국(Danish Business Authority)(www.danishbusinessauthority.dk)에 접속하여, 하단에 The Central Business Register를 클릭하면 온라인 등록사이트로 연결되는데(덴마크어로만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등록이 가능하다. 접수 이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등록이 완료되며, 즉시 영업이 가능하다.

지사

모회사가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미국, 에스토니아, 호주에 등록돼 있다면 덴마크 내 지점 개설이 가능하며 덴마크 기업국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들 국가에 소재하고 있지 않다면, 모회사는 상호인증서(statement of reciprocity)를 등록 서류와 함께 DBA로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지점을 개설할 경우, 덴마크뿐만 아니라 모회사 소재국에서도 과세대상이라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다. 덴마크와 모회사 소재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맺어져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적용: 본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덴마크에서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형태
- 등록: Danish Business Authorities에 등록 필요
- 자본금: 요구사항 없음
- 책임: 지사의 본사가 전적으로 책임
- 경영: 최소 1명의 지사장 등록 필요
- 회계: 지사의 회계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본사의 연간 회계 보고서 사본 제출 필요(회계연도가 끝난지 5개월 이내)
- 세금: 덴마크 지사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22%
- 적용법: The Danish Companies Act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시장조사 등 제한된 범위 내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활동을 할 경우 지점을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 적용: 덴마크에 지사 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사용
- 등록: 등록 불요
- 자본금: 요구 사항 없음
- 책임: 외국의 모회사
- 경영: 요구 사항 없음
- 회계: 연간 회계보고서 준비 불요
- 세금: 덴마크 내에서 판매 및 A/S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항구적인 설치로 간주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음
- 적용법: 적용되는 법 없음.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다국적 컨설팅 기관인 A.T.Kearney가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신뢰지수(Foreign Direct Investment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덴마크의 FDI 신뢰지수는 3.0점 만점에 1.710을 기록해 조사대상 25개국 중 21위로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이는 2021년 22위에서 1순위 상승한 수치이며 1위는 미국으로 FDI 신뢰지수는 2.191을 기록하였다. 유연한 노동시장, 숙련된 노동력,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세금 혜택 등으로 기업들이 비즈니스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로 손 꼽히는 덴마크이지만 작은 내수시장, 외부 환경의 충격에 취약한 특성, 높은 수준의 외부부채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 신뢰지수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첫째로, 기업의 목적과 올바른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법인 유형을 선택 하느냐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은 리스크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 단독투자, 즉 개인회사(Private company)는 일정한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개인이 회사 전체 경제적 책임 부담으로 단독적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 합작투자 형태인 유한회사(ApS)는 외국인 소유지분이 있을 경우 회사 설립 과정은 조금 까다로우며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소 자본금은 40,000DKK 이며 매년 회계 기간내 재무제표를 상공부에 제출해야 한다. ◦ 주식회사(A/S)의 경우,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일반적 절차와 필요 문서들 외에도 각 기업의 비즈니스 목적 또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추가 절차와 문서들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책임은 투자 자본금으로 제한된다. 최소한 3명의 임원으로 구성 (Chairman + 2 명 임원) 되어야 하고, 매년 회계 기간내 회계사가 작성한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상공부에 제출해야 한다. 3) 분쟁해결 외국 기업의 덴마크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덴마크 정부는 외교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investindk.com)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별 덴마크 투자 관련 전문 상담가를 배치해 투자 절차에 관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담가 정보 또한 같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대표적인 분쟁해결 기관으로는 Danish Institute of Arbitration(TEL: +45-7026-5013, https://voldgiftsinstitut.dk/)이 있다.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 A/S: 주식회사
 - 적용: 대규모 및 중간 규모 회사에 적합하며, 덴마크 주식 시장에 등록 가능
 - 등록: Danish Business Authorities에 등록 필요
 - 자본금: 최소 500,000덴마크 크로네(또는 해당 수치에 상응하는 EUR)
 - 책임: 출자 주식의 가치 범위 내
 - 경영: 반드시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최소 1명의 사장(Executive Board)이 필요
 - 회계: 회계사가 감수한 연간 회계보고서 필요
 - 세금: 법인세 22%
 - 적용법: The Danish Companies Act

유한책임회사

- ApS: 유한책임회사
 - 적용: 중소 규모의 회사에 적합
 - 등록: Danish Business Authorities에 등록 필요
 - 자본금: 최소 50,000덴마크 크로네(또는 해당 수치에 상응하는 EUR)
 - 책임: 출자 주식의 가치 범위 내
 - 경영: 이사회 또는 사장이 운영 가능하며, 양자가 모두 있어도 무방
 - 회계: 회계사가 감수한 연간 회계보고서 필요

- 세금: 법인세 22%
- 적용법: The Danish Companies Act

개인사업자

외국 기업의 경우, 자본금이 거의 들지 않는(형식적인 차원에서 1덴마크 크로네, 향후 자본금을 50,000덴마크 크로네까지 확대해야 함) 스타트업 사업체 설립은 불가하다.

- (참고) 덴마크 정부 창업자(스타트업) 프로그램
 - 외국인이 사업 아이디어를 덴마크 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에 제출하면, 고용창출 등 덴마크 경제에 공헌 및 혁신적인 사업모델(하이테크/제조업체 선호)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6주 소요) 후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레스토랑, 일반 도소매점, 무역업, 컨설팅 서비스, 여행업은 원천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Kromann Reumert

전화번호	+45 7012 1211
주소	Sundkrogsgade 5 DK-2100 Copenhagen
홈페이지	http://www.kromannreumert.com
이메일	jbh@kromannreumert.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무법인

○ Deloitte

전화번호	+45 3610 2030
주소	Weidekampsgade DK-2300 Copenhagen
홈페이지	http://www.deloitte.dk
이메일	info@deloitte.dk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회계법인

〈자료원 : 각 회사 홈페이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일반적으로 덴마크 내에서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특별한 제한도 없다. 다만 투자자의 거주지 국가가 덴마크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제한할 가능성은 있다. 덴마크는 유럽 연합 가입국이지만 2000년 국민 선거를 통해 유로가 아닌 자국의 화폐인 덴마크 크로네(Danish Krone, DKK)를 선택했다. 하지만 유로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덴마크 크로네의 화폐 가치는 유로화에 고정돼 있어 크로네의 화폐 가치와 덴마크의 경제 상황은 유럽연합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의 통화 정책과 유로존의 경제 상황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2022년 5월 기준, 1유로당 7.46038덴마크 크로네 $\pm 2.25\%$ 로 고정)

그리스 금융위기 사태 등 유로존 내 금융 악재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덴마크 내에서도 크로네 화폐 가치를 유로화에 고정하는 것을 멈추자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덴마크 중앙은행은 현재 ECB와의 사전 협의 없이 덴마크 측에서 일방적으로 크로네 화폐 가치 고정을 멈추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덴마크는 유로존에 가입돼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 지역과 마찬가지로 IBAN코드(International Bank Account Number, 국제 계좌 번호)에 의거한 자금이체 방식을 사용한다. 덴마크에서 한국 등 해외로 송금할 때는 IBAN코드를 기재해야 하는데, 국내 은행은 IBAN코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SWIFT 코드와 계좌번호, 그리고 기타 은행 정보만 있으면 된다.

외환 규제

모든 덴마크 내 거주인은 덴마크 혹은 해외에 현금 계좌를 보유할 수 있으나, 해외에 은행 계좌나 증권을 보유하는 거주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은행명, 계좌 혹은 예금 종류 등을 덴마크 내 거주자임을 밝히는 증명서와 더불어 신고해야 한다. 또한, 덴마크 국세청에 예금 혹은 계좌 조사권을 위임하고, 해외의 은행 기관이 덴마크 국세청으로 이자율 및 잔고에 대한 연간 보고 등을 승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덴마크는 해외 투자나 송금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법인 혹은 지사에 투자된 자본의 본국 송금에 대한 외환 규제는 없으며 재화 혹은 서비스의 구입 및 판매, 이자, 로열티, 배당금 및 기술 자문료를 포함해, 소득의 본국 송금에 대한 규제 또한 없다. 다만 인터넷 송금 시에는 은행별 내규에 따른 규제가 있을 수도 있는 바 이를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6.93 DKK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6,40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21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8
비고	덴마크는 최저 시급에 있어서 법적 기준이 없으며, 직업군에 따라 상이하다. 노사 합의에 의해서 실질적인 최저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데 이는 강제 규정은 아니다. 보편적으로 17~18달러 사이에서 최저임금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평균 임금수준은 시간당 39.3달러로 간부직은 65달러, 세일즈맨은 44달러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학력 무관)				

<자료원 : 덴마크 통계청>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Funktionaerloven 이라는 임금노동자 법규를 따라 계약을 한다. 덴마크 내 피고용인들은 대부분 기술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회원으로 임금,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연금 등 주요 노무 현황은 고용주 연합과 노동조합 사이에 교섭(Collective Bargain)이 이뤄지게 되며, 필요한 경우 공식 중재자를 두기도 한다. 노사분규는 드물게 발생하는 편이나 2018년에는 공공분야 노동자들의 노사분규가 발생해 파업으로 이어졌고 2019년은 SAS 조종사들의 파업이 발생하였으나 이후로는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고용계약서에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고용주와 고용인의 이름과 주소
- 작업장의 위치 또는 고정된 작업장이 없는 경우, 주로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직원이 다양한 위치에서 작업해야 하는 정보 및 사용자의 본청 또는 주소
- 직무 설명 또는 직원의 직함, 직급 또는 직무 범주
- 취업개시일
- 고용 예상 기간(영구 고용은 아님)
- 휴무 중 급여 지급 여부 등 휴무에 관한 직원의 권리
- 직원 및 고용주의 통지 조건
- 고용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적용 가능하거나 합의된 급여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 또는 기타 형태의 보수(예: 연금 기여금, 숙박 및 식사) 급여 지급 빈도도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 일별 또는 주별 표준 근무 시간
- 단체협약 또는 기타 협약이 고용 및 근로조건을 규제하는 정보. 문제가 된 단체협약이나 약정이 회사 외부의 당사자들에 의해 체결되었다면, 이들 당사자는 계약서에서 반드시 식별되어야 한다.

근로시간

임금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단체 계약(Collective Bargain)에 의해 주당 5일, 통상적으로는 37시간 근무로 설정하게 된다. (계약 내용에 따라, 조정도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주당 근무시간이 4개월 평균 48시간만 넘지 않으면 된다. 야간 근로자의 경우 매 38시간 근무 시

2시간의 별도 유급휴가 권리가 부여된다. 초과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초과 근무 수당은 조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치를 밝히기 어렵다.

고용인 연합(EMPLOYEE'S ASSOCIATION)의 회원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overtime)의 계산은 첫 3시간 동안은 150%를 지급하고 그 이후는 200%를 지급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에는 200%를 지급한다.

휴가

2020년 9월부터 새로운 Holiday Act의 발효로 인해 휴가 기준이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1년을 근무한 경우 휴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변경된 법률에 기준에 의하며, 1달 근무 시 다음 달에 2.08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1년간 최대 2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휴가일 미사용 시 최대 5일까지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다.

또한 퇴직할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월급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진다. 월급 근로자의 병가 기간이 30일이 넘어설 경우 지방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보조(reimbursement)를 받을 수 있다. 30일 이상이 넘어서면, 병가 수당(Sick Pay)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지방정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방정부는 9개월의 기간 동안 최대 22주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지급 가능한 병가수당 최고액은 주당 4,460덴마크 크로네이며, 해당 금액은 매년 고용부(The Ministry of Employment)에 의해 조정된다. 출산 휴가는 총 52주를 가질 수 있는데 출산 전 어머니가 4주, 출산 후 어머니가 14주, 아버지가 2주를 가질 수 있고, 32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누어서 가질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중 급여는 직장내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데, 경우에 따라 급여 전액을 고용주가 지급하기도 하고 덴마크 정부인 Udbetaling에서 지불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 혹은 부분적으로나마 회사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보조를 받게 된다. 지방정부로부터 최대로 보조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당 4,465덴마크 크로네이다. 만약 산전 4주 이전에 임신으로 인해 월급 근로자가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병가로 간주해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는다.

해고

해고되기 3달 전에 사전 통보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된 기간이 길수록 더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최대 6달까지 지정되어있다. 고용주가 월급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아래 규칙에 따라 사전 통보(레터 형식으로)를 해야 한다. 사무직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사전 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생산직(Blue Collar employee)의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 체결된 협약(collective agreement)에 따라 통보 기간이 정해진다(따라서 회사별로 상이하다).

- 근로일수 6개월 이내: 1달 전 통보
- 근로일수 6개월 초과~3년 이내: 3달 전 통보
- 근로일수 3년 초과~6년 이내: 4달 전 통보
- 근로일수 6년 초과~9년 이내: 5달 전 통보
- 근로일수 9년 초과: 6달 전 통보

고용 계약서상 수습 기간을 명시하고,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최소 14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 한다. 월급 근로자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큰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사직은 통보한 당월로부터 1개월 후에 가능하다. 그러나 인턴이나 단기 근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월급 근로자가 12년 혹은 17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면 부수적으로 1개월, 3개월분의 추가 월급을 보상(Severance Pay)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부당해고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에 더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하다. 6년 미만일 경우 최대 3개월, 10년 미만일 경우 최대 4개월, 15년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6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그러나 통상 3~4개월 정도의 급여를 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울러, 익년도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해 월 급여의 4.8%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까지 3년 5개월 근무한 직원을 해고 통보할 경우(4개월의 통보 기간을 주기 때문에 9월 말부로 해고), 해당 직원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2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2020년 5월 말까지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개월 사전 통보 기간 휴가를 사용하도록 고용주가 강제할 수 있다. 2020년 9개월 근무(2020.1.1~2020.9.30, 사전 통보 기간까지 포함)로 발생하는 휴가 19일(=25일 * 3/4)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퇴직금

12년 근무 시 1달 임금을 지급하며, 17년 이상 근무시 3달 임금을 지급한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다만 의사의 권고에 의한 물리치료 등 특수치료는 일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개인 부담이다. 초과 비용은 18세 미만의 경우 모두 정부가 보조해주지만, 그 이상일 경우 어떤 치료이냐에 따라 정부가 최대 25%까지 보조해 준다.

외교관 포함 외국인 파견근로자의 경우 덴마크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참고로 유학생 및 그의 가족의 경우에는 덴마크 국민과 동일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고용보험

법으로 규정된 비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노동자는 통상 약 분기별로 1,455덴마크 크로네를 납부하며 1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실직 전 3년간 풀타임으로 일한 시간이 1,924시간에 달한다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업 수당은 해당인이 국가공인 실업기금(Unemployment Insurance fund)의 회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회원인 경우에는 2021년 기준 매월 19,083덴마크 크로네까지 받을 수 있고, 전 직장 월급의 9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한편 아무런 소득이 없고 실업기금 회원이 아니며 자동차나 주택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29세 미만은 7,182덴마크 크로네, 30세 이상은 11,143덴마크 크로네가 주어진다.

산재보험

직원을 고용한 모든 기업은 산재보험비를 지불해야 하며 최초 비용은 2,000 크로네로 시작된다. 직원 수가 증가할수록 산재보험비는 증가하나 인당 2,000 크로네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한다.

국민연금

덴마크 연금제도는 3층 피라미드 구조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정부에서 받는 국민연금과 이를 보충하는 의무가입의 직장연금,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로 마련하는 개인연금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은 연금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소득이다. 하지만 나이, 결혼유무, 직장이력, 주거지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수령금액은 달라지게 된다.

연금 수령연령에 도달하고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2019년과 2022년 사이에 국민연금 수령연령은 6개월 단위로 조정이 되었다.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65세가 연금수령 대상이며, 이후 6개월 마다 연장되어 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69세가 국민연금 수령 대상이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세는 단일 세율로 2022년 기준 22%이다. 법인세는 면세항목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총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덴마크에 주재하는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과세되지만, 비거주 기업은 덴마크에서 발생된 소득에 한해서 과세된다. 모든 덴마크 기업을 포함한 과세 가능한 영구 설립 기관(예: 지사)을 둔 비거주 외국 기업은 세무기간마다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 회사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인데,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6개월 이내 연차보고서와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소득을 토대로 3월 20일, 11월 20일을 기한으로 세금을 2회 납부하는데,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과소납부된 세금은 11월 20일까지 세액의 4.4%의 부가세로 납부된다.

- 법인세 : 22%
- R&D 비용의 130% 세금 환급
- 기업인수시 발생한 이자의 전액 세금 환급
- 법인세는 비용 공제를 한 후에 납부
- 해외에 지점을 둔 덴마크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금지

개인소득세

덴마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덴마크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덴마크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다.

덴마크에 완전체류한 개인은 2022년 통상세제에 따라 최대 52.07%(실업기금세 포함 최대 55.9%)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자 많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이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소득세, 지방세, 실업기금, 교회세를 부과받는다. 세금을 평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소득이 적용된다.

- 개인소득(급여, 현물급여, 자영업소득, 연금소득 등)
- 자본소득(이자소득, 이자비용, 순과세자본이익 등)
- 과세소득(개인소득이 자본소득에 추가되고 특정 항목별 공제에 따라 조정됨)
- 주식수익(배당금, 주식에 대한 자본 이득).
- 재산가치(덴마크 또는 해외에 위치한 재산의 가치).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세율도 달라진다. 이는 또한 어떤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공제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 : 12.1~15.0% (소득에 따라 상이)
- 지방세 : 평균 24.982% (과세 소득에 따라 상이)
- 실업기금 : 8% (소득에 따라 상이)
- 주식수익세 : 27~42% (주식수익에 따라 상이)

순 자본소득은 최대 42%의 세율로 과세된다. 교회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0.7%의 세율로 부과하나 덴마크국립교회(루터교) 신도들에게만 부과된다.

특별외국인세제가 존재하는데 덴마크에 고용된 외국인과 덴마크에 파견된 과학자는 최대 84개월간 총급여에 대해 27%의 균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제 가능한 직원연금 출연금 공제 전 보장급여가 평균 70,400 크로네(202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실업기금세를 포함할 경우, 84개월 동안 합산 세율은 매년 32.84% 이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Moms)는 기본적으로 25%이며 신문, 택시, 버스, 기차, 항공권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일부 상품 (설탕, 주류, 담배 등)에는 별도 세금이 적용된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이외에 등록세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차량 가격에 따라 달리 산정된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kWh 배터리 용량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 개인차량 자동차의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다.

- 65,800 크로네 이하 차량 : 25%
- 65,800~204,600 크로네 차량 : 85%
- 204,600 크로네 이상 차량 : 150% 부과

부가가치세 이외에 차량 등록세는 배출하는 CO2 양에 따라 그램당 253 덴마크 크로네 ~ 961 덴마크 크로네가 추가 부과된다.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최대 45kWh까지 배터리 kWh 당 1,300 크로네가 공제되며, 2023년에는 900 크로네, 2024년에는 500 크로네로 감소하며 2025년부터는 소멸한다.

다만, 2026년 이전에 차량을 등록하면 계산된 세금의 40%만 납부하면 된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덴마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식물 품종 보호, 영업 비밀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모두 각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별개의 법 규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발명의 유형으로 물건, 장치, 기기 및 방법발명이 있다.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하고,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허권은 특허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권은 특허에 비해 더 완화된 기준에 따른 진보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간 보호되며, 위 보호기간은 각각 3년 및 4년의 추가 기간 내에 갱신할 수 있다.

디자인은 신규성이 인정되고,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디자인권으로 등록 가능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최장 25년까지 갱신 가능하다. 덴마크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덴마크는 상거래에서 타인의 상품 및 상표와의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 문자, 숫자, 상품 또는 포장의 형태, 소리로 이루어진 표시를 상표로 보호하고 있다. 상대적, 절대적 거절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년간 유효하며 10년간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의 생애 전체와 저작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사후 70년간 존속된다.

한편, 덴마크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9. 청산 및 철수

청산 및 철수

덴마크 기업법 조항 14에 따라, 철수.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본회사란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법인들이다. 부채를 정리할 수 없는 법인들은 파산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합병이나 분사 등과 관련된 청산도 기업법 조항 15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래 기술한 절차는 법인 법규 조항 14에 따라, 지급성명서 기업 해산(Opløsning ved betalingserklæring), 자산과 부채의 정산(Likvidation), 강제 해산(Tvangsopløsning) 세 가지 방법으로 대별된다. 법인 철수 시 부가가치세와 A 세금제도에서 탈퇴해야 하며 indberet.virk.dk(Webreg 디지털 등록)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 변호사를 선임해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 지급성명서(Betalingserklæring) 기업 해산

자본소유주/법인소유주(주주)들이 모든 채무를 청산했다고 기업청(Erhvervsstyrelsen, The Danish Business Authority)에 신고하면 법인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성명서는 모든 자본소유주/법인소유주들의 서명이 필요하며 이들의 성명과 주소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세금이 체류 되지 않았다는 국세청 발급 확인서를 동봉해야 한다. 기업청이 요구한 대로 정확하게 성명서가 제출돼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급성명서는 국세청 확인서와 함께(자본소유주/법인소유주들이) 서명한 지 2주 이내에 기업청에 제출돼야 한다. 국세청의 확인서 발급 지연으로 인해 성명서 제출 시일이 늦어질 경우에는 국세청 확인서가 차후에 제출될 것임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늦어도 4주 안에 제출돼야 한다. 법인의 해산이 기업청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됐으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성명 시 드러나지 않은 채무가 차후에 드러날 경우 자본소유주/법인소유자들이 개인적, 무제한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 청산

자본소유주/법인소유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어떤 형태로 기업을 청산할 것인지 합의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 법인을 해산시킬 수 있는 청산인들을 임명해야 한다. 기업청에 신고가 된 즉시 법인의 해산은 청산인들의 책임이다. 이사회나 경영진은 더이상 법인의 대표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 청산인을 지정하는 특별한 규제는 없다. (다만, 성인이어야 하며 후견인일 수 없다) 청산인은 언제든지 청산인을 임명한 자에 의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은 청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청산 중”이란 명칭을 법인명 사용 시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 청산 결정이 된 후 2주 안에 기업청에 청산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류는 virk.dk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고 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청산 결의문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청산인은 법인과 관련된 모든 채권자들에게 청산에 대한 서신을 발송해야 한다. 청산은 디지털 신고 Webreg(indberet.virk.dk)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기업청은 청산 신고를 받은 후 직접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며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청산인에게 신청하도록 독려한다. 채권자들은 3개월 내, 요구사항을 접수시켜야 한다. 청산인은 최소한 3개월이 지난 후에 법인을 완전히 청산시킬 수 있다. 채권자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청산인은 등기 서신으로 채권자에게 4주 이내에 법정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법인이 청산 절차 중에 있어도, 배당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청의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한다. 청산잉여금은 채권자들에게 부여된 3개월이 지난 후 지급이 가능하다. 단,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우선시 돼야 한다. 법인 법에 의거해 청산잉여금을 미리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정확하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시만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우 자본소유주들이 청산이 완료되기 전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빼낼 수 있지만, 법에 의해 상환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청산잉여금이 지급된 후 주주총회 시 청산인이 준비한 청산회계보고서를 주주들이 검토 후 확인함으로써 청산절차가 마무리된다. 청산 절

차 마무리 후 2주 안에 청산인은 기업청에 청산종료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청산회계보고서 및 주주총회결의문을 같이 제출해야 하고, 기업청은 이후 법인이 청산됐다고 기록한다. 청산절차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 따라서 청산절차가 장기적으로 이뤄질 경우, 여타 법인과 마찬가지로 매년 회계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강제해산

기업청은 다음의 경우 파산법원에 법인의 강제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법인이 합법적인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회계사가 없는 경우, 기업청에 매년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청의 이 같은 결정은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공식화해야 하며 법인의 명칭은 반드시 “강제해산 중”이라고 같이 표기되어야 한다. 파산법원은 이에 따라 청산인이나 회계사를 임명한다. 청산인은 법인 경영진을 대신하며, 경영진은 더 이상 법인을 경영할 수 없다. 단, 경영진은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청산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파산법원은 법인의 경영진 및 주주를 출두시켜 어떤 식으로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법원에 출두 시 경영진은 법인 재설립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청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보통 홈페이지 www.virk.dk 로 안내). 단, 법인은 3개월 이내에 재설립을 시도해야 하며,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제해산 중에 있었을 경우에는 재설립을 시도할 수가 없다.

◦ 지사(Branch Office) 및 연락사무소(Liasion Office) 철수

지사 철수 시 회사등록번호가 삭제되며 덴마크 내에서 더 이상 합법적으로 지사를 운영할 수 없다. 지사는 기업청의 전산 등록 시스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 삭제된다.

- 기업청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 지사에 더 이상 지사장이 없고 기업청에서 규정한 시일 내에 새 지사장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 지사의 외국 본사 연간 회계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지사의 소유자가 EU 또는 EEA 국가(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거주자가 아닌 관계로 덴마크 내에서 지사의 자산에 대해 총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

지사를 철수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www.virk.dk 에 접속해 Lukke virksomhed 를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하거나, 정식 서신을 anmeldelse@virk.dk 기업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의 양식을 사용해 A 세금제도에서 탈퇴하면 된다. 삭제 후 외국 본사가 지사 재설립을 요청할 경우 기업청의 규정에 따라 재설립이 가능하다. 단, 지사 소유주가 정식으로 권한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외국 본사는 새 지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삭제된 지사를 재설립할 수 없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특성

소비인구

덴마크는 전체 인구가 약 591만 명(2022년 기준)으로 시장의 절대적인 규모는 작은 편이다. 그러나 덴마크는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하나의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나이 별로는 20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22%, 20세 이상부터 60세 미만 인구가 52%, 60세 이상 인구가 26%로 구성되어 있어 구매력이 있는 인구 비중이 높은 편이다.

덴마크의 수입 규모는 1,259 달러(2021년 기준)이며 비교 열위에 있는 상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고가품 생산에 주력해 화학, 의약, 측정 장비, 디자인, 가구, 오디오, 건설 기술, 발효 기술, 시멘트 공장 설비, 조립식 완구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간재를 수입해 기술, 디자인을 결합시킨 고부가제품 수출에 강점이 있다)

* Designed in Denmark, Made in Asia 전략 보편화 →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재편

〈자료원 : 덴마크 통계청, Statista〉

소비 성향

덴마크는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 기준, 2021년)은 67,218달러에 이르는 고소득 국가로 의류, 전기, 전자제품, 신변용품 등은 고급 브랜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율의 세금 부담으로 인해 저가의 생활용품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바이어나 최종수요 고객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이 가격이다).

덴마크 소비자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환경 보호 제품, 유기농 제품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수 여부 또한 구매 결정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덴마크는 대표적인 소량 다품종 시장이다. 덴마크는 인구 규모가 작아, 전체 무역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보다는 다양한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산업구조가 형성돼 있다. 따라서 수입할 때에도 수량이 많지 않아 MOQ로 인해 국내 업체와 계약 불발이 잦다. 바이어들은 소량씩 구매해 시장의 반응을 봐가면서 물량을 늘리려고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케이스가 많다.

한편, 일반 소비 제품의 경우 대형 체인점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 생활용품, 안경 등 일반 소비재의 경우 소수의 대형 체인점이 영향력을 가지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상거래 형태는 매우 보수적이다. 처음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나, 일단 거래 관계를 형성하면 쉽게 거래선을 바꾸려 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많은 덴마크 바이어들은 처음 수입 결정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테스트와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최초 상담에서 첫 번째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보통 1~2년 가까이 소요된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갑작스레 테스트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연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테스트 결과에 만족하면 보통 덴마크나, 더 넓게 스칸디나비아 지역(스웨덴, 노르웨이 등 포함)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CE 등 인증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 민감하며, 제조업체가 인증서를 제공하면 이를 제3의 검사기관을 통해 유효한지를 의례적으로 확인한다. 최근 들어 중국업체들이 CE 인증 마크를 위조(형태는 매우 유사하나, Conformance Europeene 의 뜻이 아닌 Chinese Export의 의미라고 함) 해 부착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참고로, 국내 한 중견업

체가 만료된 CE 인증을 갱신하지 않고 수출해 바이어가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한 바 있다(국내제조업체가 CE 인증을 갱신받아 다행히 소송이 철회됐다.).

소비재의 경우에는 단순히 '품질+적당히 저렴한 가격'(소위 샌드위치 전략)만으로는 바이어에게 어필이 불가하다. 대부분이 값싼 중국산에 익숙해져 있어 엄청난 가격 인하가 아닌 이상, 중국산과 필적할 수 없다. 세련된 디자인과 기존 출시된 제품과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고,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기업과 제품의 '스토리'가 필요하다.

덴마크는 깨끗한 국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이며, 많은 덴마크인이 환경 문제를 실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제품의 시장성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에 따라 친환경, 오가닉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에 맞춰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친환경제품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선보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Matas에서는 PL 제품 모두에 대해 Swan Eco-Label(친환경제품 인증) 획득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수 여부 또한 덴마크에서는 중요한 이슈이다. 덴마크 정부는 공공분야 사업 추진 시 사회적 책임을 이수한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2009년부터는 사회적 책임 활동 내역을 연차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법제화해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제화 덕분에 덴마크 회사들의 CSR 추진 현황은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90% 기업이 2단계에서 3단계로 이동 중인 상황이다.

- 1단계: 간신히 법만 준수
- 2단계: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부담(extra responsibility)'
- 3단계: 경영활동의 핵심전략으로 활용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의 대덴마크 주요 수출품목중 덴마크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선박이 3위(수입시장 점유율 11%), 자동차가 6위(점유율 3.1%)를 기록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휴대폰은 애플과 삼성이 전체 시장의 82%를 점유하고 있는데 삼성제품이 21.5%의 시장점유율로 애플과의 격차를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일부 특수한 품목을 제외한 품목 대부분은 아직도 수입 시장 점유율은 낮은 상황이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덴마크 수입시장 점유율은 0.6%로 28위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경쟁국인 대만(30위), 일본(36위)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며, 과거 한국 상품에 대한 평가는 가격과 품질 면에서 중국 등 개도국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중간 정도라는 인식이 주도적이었으나, 한국산 휴대폰, 스마트 TV 등이 최고 제품 반열에 올라서면서 한국 제품 전체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삼성과 LG의 전자제품은 쉽게 눈에 띄며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 화웨이 등 핸드폰 기업들의 제품이 덴마크 시장에서 확대됨에 따라 위협적인 상황이나 여전히 중국 제품보다 품질 면에서 우위라는 평이 다수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지역의 코로나 신속진단 키트가 한국제품으로 승인받음에 따라 의료용품에 대한 인지도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K-뷰티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화장품만을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 화장품 수출액(HS 3304)은 2018년 1.4백만 달러, 2019년 2.9백만 달러, 2020년 3.9백만 달러, 2021년 5.5백만 달러 등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 중에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비즈니스 언어

덴마크인의 76%가 모국어인 덴마크어와 함께 영어를 구사한다. 특히,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 지역에서는 덴마크어를 모르는 외국인 이 영어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언어 로써 영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본적인 인사말과 감사 표현 등은 덴마크어로 알아두면 처음에 대화를 트기에 용이한 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인사는 Hej(하이), 감사 표현은 Tak(탁)이나 Mange Tak(망헨탁) 등으로 표현한다.

2) 바이어 접촉 시 유의사항

덴마크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덴마크 기업들은 가능한 인력을 절감하려 한다. 따라서 구성원 각각이 매우 바쁘며, 특히 회사 고위층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상담 약속을 위해서는 최소한 2주 전에 접촉하는 것이 좋다. 일단 상담 약속이 잡히면 상담 약속을 어기는 경 우는 많지 않으나, 2~3일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덴마크 사람들은 대체로 약속을 잘 지키는 만큼 상대방의 시간 엄수 여부 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덴마크의 일반적인 퇴근 시간은 오후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이기 때문에, 상담시간은 덴마크 사람들의 근무 시간인 오전 8시 반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시작해, 오후 4시 반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 또한, 금요일은 대체로 많은 덴마크 사람들이 평소보다 근무를 일찍 마치므 로(오후 3시 이전), 오후 늦게 업무와 관련한 전화 또는 상담을 시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특히 금요일 오후의 경우에는 보통 3시 이전 에 퇴근하고, 일부는 1시 전후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금요일에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 오후보다는 오전에 전화를 시도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바이어에게 연락을 취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명확히 하면서, 간 결하게 보내는 것이 좋다.

- 연락을 취하는 목적
- 업체 및 제품에 대한 소개: 영문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효과적이며 일반적인 소개나 스팸성 메일보다는 해당 업체에 맞춤형된 내용이 필요(인증여부, 유럽 내 다른 국가로 판매된 레퍼런스 등도 제공하는 것이 도움)
- 한국 업체 담당자의 주소, 전화, 팩스 등 연락처

영어에 서툰다고, 구글 번역기를 돌려 한글을 영어로 단순 변환해 보내는 것은 금물이다. 바이어는 이를 직감적으로 알아보며, 상당히 불 쾌감을 느껴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KOTRA가 운영하는 바이코리아 등에 문의가 게재됐을 때, “Feel free to contact me” 라고 간단하게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어들은 이를 프로답지 못하다고 여겨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 회사 소개는 간략하게 하고, 제품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이메일 본문에 쓰고 자세한 정보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라고 보내는 것이 바람직 하다.

바이어와의 연락 시에는 구매 수량에 따른 가격 차이 등 일반적인 거래 가격 수준을 포함하는 것이 좋으며 가격 수준을 처음부터 너무 높 게 제시하기보다는 초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덴마크 바이어들은 처음에 제시된 가격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협상을 위한 가격 폭은 10%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계약 체결

결제 방법은 신축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초기 거래 때에는 바이어에 대해 신뢰가 부족 하기 때문에 L/C 베이스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뢰가 구축되면 바이어의 입장에서 거래 조건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L/C 개설에는 은행 수수료가 많이 들고 목돈이 잠기기 때문에 L/C 조건의 거래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덴마크 바이어들은 초기에 소량 주문을 통해 시장성 테스트, 품질 및 납기 기한 이행 여부 등 기본 요소들을 점검하고 신뢰가 쌓일 경우 거래 규모를 늘려가기 때문에 초기의 소량 주문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초기 접촉 → 테스트 및 거래에 대한 협상 단계 → 테스트를 위한 소량 주문 → 신뢰 구축 단계 → 대량 주문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통상 초기 접촉부터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는 6개월에서 1~2년이 소요된다.

비즈니스 미팅 시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관심 있게 청취하며 상담 중 바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다. 덴마크에서는 대부분 회사의 사장도 운전을 직접 하며, 커피도 직접 대접하는 등 엄격한 격식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대했다가는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한 한국업체는 덴마크 업체와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교신하다 덴마크를 방문했는데, 덴마크 업체 측에서 공항 영접을 나왔다. 한국 출장자는 공항 영접을 나온 사람의 직위가 낮다고 생각해 함부로 했는데 나중에 상담장에서 보니 공항 영접 나온 사람이 사장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덴마크의 경우 제품이 복잡하지 않고, 물량이 매우 크지 않은 경우는 쌍방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 조건만 합의되면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러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할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아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독점 판매 지역과 관련해 덴마크 바이어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3개국을 하나의 상권으로 생각하고 스칸디나비아 국가 전체의 독점 에이전트 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 특별한 바이어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해도 무방하나 가능하면 거래를 일단 한 번 해보고 독점권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독점권을 주기로 한 경우라 하더라도 바이어가 독점 판매권만 보유하고 마케팅을 잘못할 경우 다른 좋은 바이어가 나타나도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간 최소 주문 수량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리고 능력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점 판매 권한의 기한을 너무 길게 설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1년 정도로 설정하고 만족할 경우 갱신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금 결제, 운송, 품질 조건 등 의무와 권리가 수반되는 조항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한다.

분쟁 해결 조항에서는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 가능한 덴마크 상사 중재 기관이나 덴마크 법원의 판정을 보다는 대한 상사 중 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국제 상사 중재원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 조언을 받아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송금수수료 문제로 거래 초기 단계에서부터 바이어와 관계가 틀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 부분도 사전 협의를 통해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덴마크 바이어 중 상당 부분은 덴마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겉보기에는 어리숙해 보일지 몰라도, 덴마크인 대부분이 이문에 밝다. 절대로 자신이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내가 이만큼 알아서 해줬으니 상대방도 이해해주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일례로, 한국업체에서는 바이어가 요구하지도 않은 제품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제품 출고 일자를 일방적으로 늦췄다. 미리 양해를 구했다면 바이어가 고마워했겠지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로 쉬핑이 늦어져 바이어는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국내 업체는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응수했지만 바이어 반응은 싸늘했다.

또한, 덴마크 바이어들은 공짜 샘플을 좋아한다. 당신 제품을 팔기 위해 내가 수고하니 당연히 샘플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그런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온 업체들이 많다.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제조업체가 그만큼 비즈니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거래에 임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는 거래선을 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바이어 성향에 따라 테스트 기간이 다르겠지만, 정말 뭔가 이뤄지려면 적어도 2년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중간에 재촉해도 소용이 없다. 자신만의 페이스에 따라 테스트하고, 결과를 꼼꼼하게 분석한 후에, 되겠다 싶으면 제조업체에 연락해서 오더를 한다. 물량도 처음에는 적게 시작해서 시장 반응을 보고 늘려가는 것이 보편적이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덴마크 사람들은 복장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식 석상과 같은 중요한 자리는 정장 차림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상담 때에도 가급적 정장 차림이 좋으나 불가피할 경우는 아주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깔끔한 차림이면 된다.

2) 선물

덴마크 사람들은 작은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도 선물(주로 꽃이나 작은 케이크)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상담 때에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생일, 크리스마스 등에 축하 카드나 선물을 챙기는 것도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일례로, 국내 업체 S사는 상담이 주선된 바이어들마다 이름을 새겨 시계를 선물했다. 바이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이를 계기로 S사는 바이어들에게 업체명을 각인시켰고, 자연스레 거래관계로 발전하여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에서 크리스마스는 한국의 추석과 같은 개념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관례화된 매우 큰 휴일이다. 그러나 선물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선물의 종류로는 한국 전통 수공예품 등이 좋다.

3) 화상상담

코로나 발생이후, 화상상담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미팅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제품을 보여줄수 없고 통역을 활용할 경우 시간소모가 면대면 상담보다 크기 때문에 간결하고 의사전달이 확실할 수 있도록 상담을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담 참가자들의 본인소개와 업체소개를 하면서 상담이 진행되며, 업체소개시 너무 길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며, 화상상담 플랫폼 활용법을 숙지하여 (가령 화면공유 기능 등) 상담을 진행하면 좋다.

4) 금기사항

누군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아예 그 사람과의 접촉을 끊는 경우도 많다. 바이어에게 연락을 한 후에는 적어도 1주일 이상 시간을 줄 필요가 있고,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면 연락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조바심을 내면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례로, 국내 기업 T사는 덴마크 굴지기업과의 미팅 주선을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메일을 보내며 미팅 주선을 요청했다. 바이어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메일을 보내고 전화까지 하자 바이어는 절대 미팅을 하지 않겠다는 답을 했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한국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혹은 스팸 메일로 취급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ActiveX 등 별도의 다운로드를 요하는 메일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가 덴마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5.6%에서 2021년 7.8%로 증가),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zalando, wish, amazon 등 외국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 인구가 많으나 최근 덴마크 기업의 자체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1) Nemlig.com(www.nemlig.com) ○ 개요: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슈퍼마켓이라는 컨셉으로 2010년 시작하여 점점 규모를 키워왔으며 2020년 이후 식자재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Nemlig.com은 2010년 설립되었으며, 2021년 기준 매출액은 3,200백만 크로네(약 \$507백만), 고용인원은 334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식료품이 주를 이루며 일일 생활소비재도 판매하고 있다. ○ 특징: Coop이나 Salling과 같은 대규모 슈퍼마켓들을 가진 기업들이 오프라인 매장과 함께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반면에 Nemlig.com은 처음부터 온라인 매장으로만 판매를 진행함으로써 중간에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음을 어필하고 있다. 2) Matas(www.matas.dk) ○ 개요: 한국의 올리브영과 같은 드럭스토어로 다양한 브랜드의 미용 및 건강 관련 제품을 모아 판매하고 있으며, 덴마크 곳곳에 263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 중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Matas는 1949년에 설립되었으며, 2021년 기준 매출규모는 4,164백만 크로네, 고용 인원은 3,312명에 달한다. *주: Matas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4월부터 당해 년도 3월까지를 기준으로 함 ○ 주요 판매 품목: 미용과 건강 관련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Matas 자체 제작 상품도 판매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을 내세워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고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외에도 덴마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로열티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160만 명에 달한다. 3) Wupti(www.wupti.com) ○ 개요: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 매장만 운영하는 회사로 Wupti 설립 초기에는 주로 전자제품만을 판매하였다. 2015년 덴마크의 가장 큰 유통회사인 Salling Group에 인수되면서 가구, 장난감 등 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Wupti는 2006년 설립되었으며, 2021년 기준 매출규모는 Salling Group 전체 45백만 크로네, 고용인원은 50명 이내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가전제품, 가구, 장난감, 정원용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 중이다. ○ 특징: PriceRunner 구매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PriceRunner 멤버로 가입된 경우 구매 및 배송 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최대 US \$ 7,885 상당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4) Stylepit(www.stylepit.dk) ○ 개요: 오프라인 매장없이 온라인으로만 20년 이상 운영되어왔으며 현재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북유럽 국가 전체에 판매를 진행 중이다. 덴마크 신문사 Børsen에서 매년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에게 주는 Børsen Gazelle이라는 칭호를 6년 연속으로 부여 받았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Stylepit은 2000년 설립되었으며, 2021년 기준 매출규모는 11백만 크로네, 고용인원은 28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의류 및 패션 물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고객 만족도를 최우선에 두고 빠른 배송, 쉬운 반품,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회사 미션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주문 완료 후 1~2일 내 배송, 50일 이내 무료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쉘바이오텍, 프로바이틱스 종주국 덴마크에 성공적으로 안착

- 회사명: 쉘바이오텍
- 주 업종: 유산균원말, 분말제품, 기타 낙농제품 제조
- 홈페이지: www.cellbiotech.com
- 현지법인명: Cell Biotech Europe A/S

지사나 연락사무소의 형태가 아닌 현지 법인으로 덴마크에 투자한 기업은 쉘바이오텍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쉘바이오텍은 유산균 전문기업으로 유산균이 사람 몸에 들어가 위와 장까지 손실 없이 이동하도록 하는 '유산균 이중코팅'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으며 특허를 받은 유산균 원말을 수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일찌감치 듀오락 브랜드를 선보였지만, 프로바이틱스 전문 ODM 기업으로 입지를 굳힌 덴마크에서 자체 브랜드 론칭을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고심이 따랐다. 그러나 마늘, 고추, 생강 등 자극적인 향신료를 섭취하는 한국인의 장에서 분리한 '한국형 유산균'에 유산균 장내 생존율을 높여주는 듀얼 코팅 기술이라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 과감히 ODM 계약을 끊고 2014년 자체 브랜드를 출시했다.

이후 덴마크 현지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기술력을 알려, 출시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덴마크 시장 점유율 15% 확보에 성공했다. 프로바이오틱스 배양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크리스찬한센, 다니스코, 로셀 등 많이 있지만, 종균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일괄 체제를 구축한 글로벌 기업은 쉘바이오텍을 포함해 5곳 뿐이다.

특히 1g 안에 1,000억 마리 유산균을 농축하는 기술은 단연 최고 수준이다. 덴마크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유산균 식품 선진시장으로 분류되어, 일류 유산균 기업들이 경쟁하시는 시장에서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복안)과 유럽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프랑스, 독일에서도 '듀오락' 브랜드로 진출했다. 듀오락의 성공적인 덴마크 진출 여세를 몰아, 2019년과 2020년 상반기 동안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과 전문잡지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2) 하이에어코리아, 덴마크 노벤코 인수로 시장지배력 확대 발판 마련

- 회사명: 하이에어코리아
- 주 업종: 선박공조 전문
- 홈페이지: www.hiairkorea.co.kr, www.novencogroup.com
- 현지법인명: Novenco Group(기존의 상호명 그대로 사용)

2013년 10월 말, 세계 1위 선박공조 전문 회사인 하이에어코리아는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해, 2위 업체인 덴마크 노벤코 그룹을 전격 인수했다. 1947년에 설립된 노벤코는 세계 2~3위를 오가는 덴마크 최대 선박공조회사로 선박 및 해양 플랜트는 물론 터널과 주차장, 건물용 특수 공조부품을 생산하고, 유럽 내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어 사업 영역 확대 및 현지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 해피엔자임, 유산균 종주국 덴마크에 쇼룸 오픈

- 회사명: 해피엔자임
- 주 업종: 유산균원료 각종 영양제

기존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던 해피엔자임사는 본격적인 덴마크 시장 진출을 위해 코펜하겐 시내 중심가에 다양한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쇼룸을 오픈하고 덴마크 시장진출을 확대했다. 유산균을 원료로 종합비타민인 덴프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해피엔자임은 트루바이타민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덴마크에서 직수입하는 유산균으로 제조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유산균이야기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덴마크 원료를 광고로 하여 중국시장에 인기몰이하고 있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비자 규칙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newtodenmark.dk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단기 방문비자

한국과 덴마크 간에는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돼 관광객(90일 이내 체류)은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다.

2) 장기 체류비자

덴마크에서 90일 이상 근무하거나 체류할 계획이라면 거주 또는 노동허가권을 신청해야 한다. 비자신청은 VFS Global의 노르웨이 비자 신청 센터(<https://visa.vfsglobal.com/kor/en/nor>)에 덴마크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건 및 수수료 등은 newtodenmark.dk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워킹 홀리데이 비자

코로나로 인해 잠정중단 되었던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재개되었다. 한국인의 경우 18세 이상 31세 미만자가 대상이며, 보유자금, 의료보험 유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워킹 홀리데이 체류기간 동안 9개월 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yidanmark.dk/en-GB/You-want-to-apply/Working-Holiday/Working-Holiday>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4) 노동허가 취득방법

○ Fast Track Scheme

- 믿을 수 있는 회사(D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Recruitment and Integration, SIRI가 인증한 회사)로부터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 기간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체류가 가능한데 고용 만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직장에 있는 한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 The Pay Limit Scheme

- 연봉이 448,000 덴마크 크로네 이상일 경우(2022년 기준), 고용 계약서를 제출하면 고용 기간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유효한 노동허가권이 발급된다. 고용 만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직장에 있는 한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 Positive List

- 덴마크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엔지니어, 건축기사,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 등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한 직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취업허가를 내주고 있다. 세부 직업 내역은 일 년에 두 번(1월 1일, 7월 1일) 업데이트되며, 웹사이트(www.nyidanmark.d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이 명시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면 고용 기간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체류가 가능한 거주권이 나온다. 고용 만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직장에 있는 한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 Researcher

- 덴마크에서 연구원으로 유급직 제의를 받은 경우 거주지 및 노동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객원 연구원과 박사과정 학생에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이 명시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면 고용 기간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이 나온다. 고용 만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직장에 있는 한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 PhD studies

- 덴마크 대학에 박사과정 학생으로 등록해있거나 대학이나 박사과정 소속 기업에서 급여를 받으면 박사과정 없이 박사과정 입학 허가

를 받을 수 있다. 덴마크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면 덴마크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6개월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구직 기간에 취업을 제안받으면 반드시 새로운 거주 또는 노동허가권을 신청해야 한다.

- Start-up Denmark(self-employment)

- 덴마크 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이 지정한 전문가 패널이 사업 아이디어를 승인했다는 전제하에 신청이 가능하며, 덴마크 경제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허가권이 발급된다. 레스토랑, 소매점, 무역업 등은 동 허가권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명까지 신규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허가권 유효기간은 2년으로, 만료 시 3년을 주기로 갱신이 가능하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출입국 시 별도의 유의사항은 없다. 출국 시 여권 및 항공권 검사, 보안 검사를 거쳐 출국할 수 있다. 최근 항공기 탑승 시 보안 검사가 강화돼 기내 휴대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이 많아졌으며 액체류는 용기당 100mL를 넘으면 기내에 반입할 수가 없고, 짐으로 수화물칸 반입만 가능하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있어 수화물로도 최대 2개만 부칠 수 있고, 기내 반입은 1~2개 내외로 제한된다.

휴대품 과다 반입 시 세관에 신고하게 돼 있다. 18세 이상 성인 1인당 양주 1리터 (혹은 와인 4리터 혹은 맥주 16리터), 담배 200개비 이상 휴대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총기류, 탄약,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은 반입이 금지돼 있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The Embassy of Republic of Korea(주덴마크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45 3946 0400
주소	Svanemoellevvej 104, 2900 Hellerup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dk-ko/index.do
비고	영사과 전화: (+45) 3946 0409

〈자료원 : 주 덴마크 한국대사관,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덴마크 총리실

전화번호	+45 3392 3300
주소	Prins Jørgens Gård 11, 1218 Copenhagen K
홈페이지	http://www.stm.dk/

◦ Invest in Denmark(외국인투자기관)

전화번호	+45 3392 1116
주소	Asiatisk Plads 2, 1448 Copenhagen K
홈페이지	https://investindk.com/
비고	덴마크 외교부 산하기관

◦ 덴마크 외교부

전화번호	+45 3392 0000
주소	Asiatisk Plads 2, 1448 Copenhagen K
홈페이지	http://um.dk/

◦ 덴마크 기업성장부

전화번호	+45 3392 3350
주소	Slotsholmsgade 10-12, 1216 Copenhagen K
홈페이지	https://em.dk/

○ 덴마크 재정부

전화번호	+45 3392 3333
주소	Christiansborg Slotsplads 1, 1218 Copenhagen K
홈페이지	https://en.fm.dk/

○ 덴마크 통계청

전화번호	+45 3917 3917
주소	Sejrøsgade 11, DK-2100 Copenhagen
홈페이지	https://www.dst.dk/en

○ 덴마크 에너지청

전화번호	+45 3392 6700
주소	Carsten Niebuhrs Gade 43, 1577 Copenhagen
홈페이지	https://ens.dk/

○ 덴마크 경쟁 및 소비자청

전화번호	+45 4171 5000
주소	Carl Jacobsens Vej 35 2500 Valby
홈페이지	https://www.kfst.dk/

〈자료원 :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7.1 DKK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4.500
2	식품	비빔밥	1인분	23.00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23.000
4	식품	신라면	1봉지	2.30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4.800
6	음료	생수 (마트)	500ml	0.40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330ml	2.000
8	의료	항생제	12정	33.60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3.40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3.400
11	교통	택시요금	10KM	38.70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남자)	1회	68.3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2.20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32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5.500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8.000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가)	360ml	14.800
18	임금	최저임금	시간	15.50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25500.000
20	금리	덴마크 중앙은행 기준금리	%	0.650

<자료원 : apoteket, OK, yousee, netflix, telenor, privatlaegen, nemlig, lyngby-private-skole, kopan, cinemaxx, Statista, Nemlig.com, Denmark National Bank>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덴마크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2000년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로(EURO)를 사용하지 않고 덴마크 통화인 덴마크 크로네(DKK)를 사용해오고 있다. 덴마크 크로네 지폐 단위는 1,000덴마크 크로네, 500덴마크 크로네, 200덴마크 크로네, 100덴마크 크로네, 50덴마크 크로네가 있다. 덴마크 지폐에는 셀란섬과 핀섬을 연결하는 그레이트 벨트 이스트 다리(Great Belt East Bridge) 등 주요 다리가 있으며 이는 토목 등 건설분야에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덴마크를 나타낸다.

환전방법

도착한 공항(카스트럽 국제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덴마크의 은행들은 주말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시내에서는 Forex Bank를 이용할 수 있다.

- <https://www.forexbank.dk/Valuta/Valuta-automater/>
- Global Exchange: <https://www.globalexchange.dk/> etc.

신용카드 이용

덴마크는 신용카드 이용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어 어느 곳이든지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핸드폰에 연동하여 사용하는 모바일 페이(Mobile Pay)도 사용할 수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코펜하겐의 대중교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코펜하겐시 중심을 순환하는 무인 지하철(Metro)은 24시간 운행되며, 코펜하겐 중심지를 벗어나게 되면 전철(S-tog)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하나의 승차권으로 모든 교통수단의 최초 탑승 이후 한 시간 내(구간이 먼 경우 2시간까지도 가능) 자유로운 상호 환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동 거리에 따라 구간이 정해져 있으며 구간마다 가격이 다르므로 출발지와 목적지의 구간을 잘 파악한 후 이동하는 것이 좋다. 덴마크 내 다른 상품의 물가처럼 교통비 또한 매우 비싼 편이다. 최소 구간은 2존(zone)으로 편도가격은 24덴마크 크로네며 모든 구간을 포함한 최대 구간 all zones의 편도가격은 84덴마크 크로네이다. 어른 소지자 한 명당 12세 미만의 아이를 두 명까지 무료로 데리고 탈 수 있다. 만약 아이가 혼자 타게 될 경우 티켓 가격은 어른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만약 7일 이상 코펜하겐에 머무른다면, 충전식 카드인 rejsekort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구입은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으나 현지 거주번호(CPR 번호)가 필요하다. CPR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구입비용은 50DKK 정도이다. 구입장소는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rejsekort.dk/en/Salgsteder>). 일반 티켓은 2존 이동 금액이 24DKK이나, rejsekort로 구입시 18DKK로 저렴하다. 한달 이상 머물고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면 Monthly Pass 구매가 더 저렴하다. (DSB 어플로 구매 가능)

관광목적으로 코펜하겐을 방문했다면, 코펜하겐 카드(Copenhagen card)를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24/48/72/120시간 별로 카드를 구매할 수 있으며, 79개 박물관과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더불어 버스, s-tog, 메트로를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고 자동차 렌트,

레스토랑, 여타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가격은 어른(16세 이상) 기준, 57유로에서 135유로이다(10~15세는 50% 수준, 0~9세는 어른 동반 시 2명까지 무료로 탑승 가능).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copenhagencard.com>을 참조하면 된다.

대중교통 운임 및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영어로 열람 가능).

- 메트로(Metro): www.m.dk
- 기차 : <https://www.dsb.dk/en/> (한국에서는 링크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음)
- 대중교통 이용 길 찾기 정보: <https://www.rejseplanen.dk/webapp/index.html>

버스

버스의 경우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심야버스까지 배치되어 있으며, 교통카드 이용 시 지하철, S-tog와 함께 환승 이용 가능하다. 여행지와 목적지까지 최적으로 노선 검색은 구글 지도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가까운 정류장 검색도 가능하다. 정류장에는 목적지와 도착 예정시간이 나오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

택시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를 제시하면 모든 곳을 다 찾아갈 수 있다. 거리에서 택시를 직접 부를 수도 있고 사무실, 호텔 등에서 전화로 부를 수도 있다. 택시 요금은 신용카드로도 지불 가능하다. 그러나 콜택시 이용 시 기본요금이 더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른 시간부터(10시까지 오라고 했을 경우 10시부터) 미터기가 올라간다는 사실 또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는 덴마크어로 자동안내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콜택시를 부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일반 택시 요금은 아래와 같다.

- 낮시간 요금 (월~금) : 기본요금 (39DKK) + 8.55DKK/km + 6.25DKK/분
- 밤시간 및 주말요금 : 기본요금 (49DKK) + 13DKK/km + 5.5DKK/분

덴마크는 Uber 서비스 이용은 불가능하며, 최근에는 덴마크 현지 콜택시 어플인 TAXA 4X35 어플을 활용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아지고 있다. 요금은 낮시간(4:00am - 8:00pm)과 밤시간(8pm-4am)에 차이가 있다. TAXA 택시를 이용할 경우 먼저 비용을 확정하여 이용할 수도 있으며 미터기 기준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TAXA 택시 이용 요금은 아래와 같다.

- 낮 시간 요금 (월~금) : 10km/12분 199DKK
- 밤 시간 및 주말요금 : 10km/12분 245DKK

다. 통신

핸드폰

덴마크에는 TDC, 3, Telenor, Telia와 같은 통신사들이 있다. 관광객이나 외국인의 경우, 해당 통신사의 현지 선불 유심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신규 무선통신전화 가입을 위해서는 CPR과 여권이 필요하다. 거주증(residence permit)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지참하는 것도 좋다. 개통비로 약 100덴마크 크로네를 납부해야 하고, 전화세는 요금제(최저 60 덴마크 크로네부터 다양함)에 따라 월별로 청구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더 쉬운 방법으로는 lebara 유심(USIM)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에 가면 30덴마크 크로네 내외로 lebara 유심을 구입할 수 있다. 유심을 사서 휴대폰에 장착한 후, 구입한 세븐일레븐에서 바로 금액을 충전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충전이 가능하다.

요금제는 최저 19덴마크 크로네로 2시간 통화/2GB 데이터/무제한 문자메시지 옵션부터 최고 119 덴마크 크로네로 200시간 통화 /200GB 데이터/무제한 문자메시지 옵션까지 총 6개가 존재한다. 한국으로의 전화도 추가 요금 없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인터넷 사용은 주로 가정에서는 월 정액제로 약 230 덴마크 크로네를 지불하고 와이파이 공유기를 이용해 사용하고, 도서관 등 공공시설, 레스토랑, 커피숍, 공항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라. 관광명소

◦ 아말리엔보 왕궁(Amaliaenborg Palace)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Amalienborg Slotsplads 5, 1257 København K, Denmark
운영시간	1월 22일 - 10월 23일 : 10:00 ~ 17:00 10월 24일 - 12월 30일 : 11:00 ~ 16:00
휴무일	월요일 (10월 24일~12월30일간) 그외 기간은 무휴 휴무일 : 11월 7일 ~ 11월 8일,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31일
명소소개	크리스천보 궁의 화재로 1794년 이래 왕궁으로 사용되고 있다. 프레데릭 5세 기마상을 중심으로 4개의 로코코 양식 대저택이 위치하며 프레데릭 3세의 왕비 소피에 아말리에의 이름을 따서 지은 궁전으로 여왕 재궁 시 국기가 게양되며 정오에 근위병 교대식이 진행돼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왕궁 근처 바닷가에는 벨기에 조경 건축가 장 델로네가 설계한 아말리에하운 정원이 있다.
비고	입장료 : 125 덴마크 크로네

◦ 크리스찬보 왕궁(Christiansborg Palace)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Prins Jørgens Gård 1, 1218 København, Denmark
운영시간	10월 - 5월 : (화-일) 10:00 ~ 17:00 6월 - 9월 : (월-일) 10:00 ~ 17:00
휴무일	월요일
명소소개	국회의사당, 대법원, 여왕 접견실이 있으며 우측에는 1640년경 세워진 증권거래소 건물(현재는 상공회의소)이 있다. 왕궁은 코펜하겐의 건설자인 압살론 주교가 건설한 성터 위에 세워져 있다. 현재의 궁은 1906~1907년에 재건립됐으며 원래 건물은 두 차례(1794, 1884) 화재로 전소된 바 있다.

◦ 티볼리 공원(Tivoli Park)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Vesterbrogade 3, 1630 København V, Denmark
운영시간	시즌별 상이(홈페이지 참조: https://www.tivoli.dk/)
휴무일	변동 가능
명소소개	1843년 건설된 티볼리 놀이동산은 미국 디즈니랜드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여러 놀이기구 및 26개의 식당, 연주회장, 각종 위락 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야경이 멋있는 것으로 유명하다(4월 말부터 9월 중순 및 10월 말 할로윈 시즌/12월 말 크리스마스 전후에만 개방).
비고	입장료 160 덴마크 크로네 (모든 장소 관람시, 일부 장소만 관람시 요금 상이)

◦ 님하운(Nyhavn)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1-71. 1051 København, Denmark
휴무일	님하운 위치 일부 식당은 요일에 따라 휴무
명소소개	프레데릭 3세의 명을 받아 건축가 Henrik Baron 경이 1660년-1673년 기간에 걸쳐 건설하였으며, 콩엔스 님토르 광장과 바다를 연결하기 위한 인공운하로 활용 하고 있다.

〈자료원 :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 캐널 카핀(KANAL CAFEEN)

도시명	코펜하겐
전화번호	(45) 3311 5770
주소	Frederiksholms Kanal 18, Copenhagen K
가격	200덴마크 크로네 이상
영업시간	월~금 11:30~17:00, 토 11:30~15:00
휴무일	일요일(변동 가능)
소개	대부분의 덴마크 식당은 음식 메뉴가 양식당과 큰 차이가 없으나 덴마크 전통 음식인 스미레브뢰라고 하는 호밀 빵 위에 육류, 어류, 달걀이나 치즈 등을 넣은 오픈 샌드위치를 맛볼 수 있다.

◦ 스틱스앤스시(Sticks & Sushi)

도시명	코펜하겐
-----	------

전화번호	(45) 3311 1407
주소	Nansensgade 59, Copenhagen (체인점으로 여러 장소에 위치)
가격	200덴마크 크로네 이상
영업시간	월~목, 일 : 12:00~21:00 금~토 : 12:00~22:00 (영업점별로 영업시간 상이)
휴무일	없음(변동 가능)
소개	몇 곳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으며 스시와 꼬치 요리 전문임.

◦ 팔레겔(Restaurant Palægade)

도시명	코펜하겐
전화번호	(45) 7082 8288
주소	Palægade 8, 1261 København
가격	4 course : 550 덴마크 크로네 (음료 별도) 5 course : 850 덴마크 크로네 (음료 별도)
영업시간	월~토 : 11:30 ~ 21:00 (14:45 ~ 18:00 휴식시간) 일요일 : 11:30 ~ 14:45
소개	나름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깔끔해 손님을 접대하기 무난하며 가격대가 다소 높은 편임

〈자료원 :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 한국식당

◦ 코판라이스(KOPAN Rice)

도시명	코펜하겐
전화번호	(45) 5357 4688
주소	Linnésgade 24, 1361 København K
가격	비빔밥 99 덴마크 크로네
영업시간	화~토 16:00~21:30
휴무일	일요일, 월요일
소개	코펜하겐 시내에 있으며, 메뉴는 비빔밥, 덮밥 판매

◦ 쌈(Ssam)

도시명	코펜하겐
전화번호	(45) 2818 3518

주소	Colbjrnsensgade 7, 1652 Copenhagen V
가격	돌솥비빔밥 105 덴마크 크로네
영업시간	월~목 : 16:00 ~ 23:00 금~토 : 16:00 ~ 23:30 일요일 : 17:00 ~ 22:00
휴무일	휴무 없음
소개	주류 판매

◦ 벚꽃(Sakura)

도시명	코펜하겐
전화번호	(45) 3313 1189
주소	Moentergade 22, 1116 Copenhagen K
가격	비빔밥 175 덴마크 크로네
영업시간	월~토 17:00~22:00
휴무일	일요일(변동 가능)
소개	일식, 한식 겸

〈자료원 :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코펜하겐 애드미럴 호텔(Copenhagen Admiral Hotel)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Toldbodgade 24-28, 1253
전화번호	(+45) 3374 1424
홈페이지	https://admiralhotel.dk/
숙박료	1박당 3100덴마크 크로네 이상 (시기에 따라 가격 상이)
소개	코펜하겐 뉘하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1780년대 건물 코펜하겐 쇼핑가와 10분 도보거리이며, 아말리엔보르 궁전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임

◦ 래디슨 블루 스칸디나비아 호텔(Radisson Blu Scandinavia Hotel)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Amager Boulevard 70, Amager Vest, 2300
전화번호	(+45) 3270 1221
홈페이지	https://www.radissonhotels.com/
숙박료	1박당 약 1700덴마크 크로네 이상 (시기에 따라 가격 상이)
소개	코펜하겐 중앙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 지하철역에서는 5분 거리

○ 웨이크업 코펜하겐 (Wakeup Copenhagen Borgergade)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Borgergade 9, 1300
전화번호	(+45) 4480 0000
홈페이지	https://www.wakeupcopenhagen.dk/hotellerne/koebenhavn/bernstorffsgade#/
숙박료	1박당 1000덴마크 크로네 이상 (시기에 따라 가격 상이)
소개	코펜하겐 시내 티볼리 공원에서 약 600m 거리에 위치 시내 근접성이 좋음

<자료원 :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

- 게스트하우스

○ 스틸하우스 코펜하겐(Steel House Copenhagen)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Herholdtsgade 6, c/o Arp-Hansen Hotel Group A/S, 1605 København, Denmark
전화번호	(+45) 3317 7110
홈페이지	https://www.steelhousecopenhagen.com/
숙박료	1박당 360덴마크 크로네 이상
소개	코펜하겐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깨끗한 시설의 호스텔

<자료원 :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

치안상황

덴마크의 치안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최근 들어 외국 난민 및 동유럽 인구의 유입 증가, 마약 복용자 증가 등으로 점점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항, 호텔, 관광객이 많은 시내 중심가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주위에서 서성이는 척하며 비밀번호를 알아냄)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을 미행해, 한눈을 파는 사이 지갑을 훔쳐간 후 현금을 대량으로 인출해가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는 바, 이에 철저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습 소매치기들은 버스에서도 익히 얼굴이 알려져, 이들이 탑승 시 버스 기사가 덴마크어로 소매치기를 지목하여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한편, 야간에는 코펜하겐 중앙역 주변의 유흥지역이나 외국인이 많은 지역은 간혹 흉악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코펜하겐 내 크리스티아니아는 1971년 군부대가 빠져나간 부지를 가난한 시민들이 점거하고 세운 자치 마을로 대마초 등 약한 마약사용이 용인되는 지역으로 크리스티아니아에서는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여행코스로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나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고, 마약에 취한 사람들도 주위에 상당수 있어 신변위험의 우려가 있다.

또한 코펜하겐 중앙역 뒤편은 스트립클럽, 성인물 전문점, 매춘여성(덴마크는 1999년 성매매 합법화) 등으로 유명한 홍등가로 저녁에는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덴마크는 무단횡단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이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모든 도로에 다 갖춰져 있어 자전거를 인지하지 못한 자동차 운전자 실수로 접촉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예방 방법으로는 무단횡단을 하지 말고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길을 건너며, 불가피하게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좌우를 살핀 후에 길을 건널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를 대비해 반드시 여행자 보험을 들고 와야 하며, 사고에 따른 부상 발생 시에 응급상황이면 112, 비응급상황이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1318로 전화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류하고 신분증을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놓으며, 자동차 사고일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증 확인 및 사진으로 촬영하여 향후 보험처리에 사용한다. (현지에서는 당사자 간 현장에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사고 경위를 파악한 보험업체끼리 상호 간에 연락을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

2) 여권/지갑 분실

여권 분실 시에는 주덴마크 대사관을 방문할 경우 임시여권 발급이 가능하며 연락처와 주소는 아래와 같다.

- 주 덴마크 대사관 : + 45 3946 0422 / Svanemøllevej 104, DK-2900 Hellerup

3) 응급전화번호

- 코펜하겐 경찰서: +45-3314-1448 / 114

- 코펜하겐 병원응급실: 1813

- 응급구조대: 112

- KOTRA 무역관: +45-3312 6658 / 주소 : Holbergsgade 14, 3rd 1057 Copenhagen K

아주 일반적인 의약품은 제외하고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감기,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등 비상 약품은 여행

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일 또는 주말의 경우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365일 영업을 하는 곳으로 지정된 약국을 찾아야 한다. 휴일 없이 문을 여는 약국은 코펜하겐에 두 곳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Copenhagen Steno Apotek(+45 3314 8266)
 - 주소: Vesterbrogade 6C, DK-1620 Copenhagen V.

- Copenhagen Sonderbro Apotek(+45 3258 0140)
 - 주소 : Amagerbrogade 158, DK-2300 Copenhagen S.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덴마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집을 구하는 것이다. 특히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집을 구한 후에야 거주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우선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덴마크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 중개소를 접촉할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부동산 포털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온라인 부동산 포털에는 집주인이 직접 매물을 올리거나 중개소가 매물을 올리는데,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덴마크에 도착하기 전부터 부동산 시장 정보를 알 수 있다.

1) 부동산 중개소

- Nybolig
 - TEL: +45 44 55 63 00
 - 홈페이지: <http://www.nybolig.dk/>
- Boligmægleren
 - TEL: +45 35 36 14 14
 - 홈페이지: <http://www.boligmaegleren.dk/>

2) 부동산 포털사이트

- Bolig Portal: <http://www.boligportal.dk/>
- DBA: <http://www.dba.dk/boliger/>
- Findrommate: <http://www.findroommate.dk/>
- Facebook Page

최근에는 집 계약 시 임대인들이 임차료 세달 치 이상을 보증금으로 요구하는데, 이는 임대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의할 점은 계약 해지 시 임대인들이 집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한인들이 많다. 수도 코펜하겐은 유럽 각지에서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이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 몰려들어 주택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따라서 임차료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심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비싼 가격에 비해 낡고 좁은 경우가 많아 보통 가족 단위로 이주하는 외국인들은 비교적 주택난이 심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의 겐 토프트(Gentofte), 헬러럽(Hellerup), 링뷔(Lyngby)등 코펜하겐 근교 수도권 지역에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헬러럽에는 대사관이 밀집돼 있고 코펜하겐 국제학교(Copenhagen International School)가 위치해 있어서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교외 지역에서 코펜하겐 도심까지 가는 데에는 전차로 20~30분가량 소요된다.

집 임차료는 위치와 크기에 따라 월 4000덴마크 크로네에서 45,600덴마크 크로네까지 천차만별이며 12,000덴마크 크로네~25,000덴마크 크로네 정도의 수준이면 외국인 거주지역에 보통 마음에 드는 수준의 집들을 구할 수 있다.

전화

신규 무선통신전화 가입을 위해서는 CPR과 여권이 필요하다. 거주증(residence permit)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지참하는 것도 좋다. 개통비로 약 100덴마크 크로네를 납부해야 하고, 전화세는 요금제(최소 130덴마크 크로네)에 따라 월별로 청구된다. 참고로, 무선 통신전화기로 한국에 전화를 걸 경우 매우 비싸기 때문에(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분당 15덴마크 크로네),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현지 거주자가 한국에 Collect call로 전화를 희망할 경우에는 (8001+ 0382)를 누르면 한국어 안내가 나온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더 쉬운 방법으로는 lebara 유심(USIM)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에 가면 30덴마크 크로네 내외로 lebara 유심을 구입할 수 있다. 유심을 사서 휴대폰에 장착한 후, 구입한 세븐일레븐에서 바로 금액을 충전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충전이 가능하다.

요금제는 3가지 옵션이 있는데, 10시간 통화/60GB 데이터/무제한 문자메시지(99덴마크 크로네), 15시간 통화/100GB 데이터/무제한 문자메시지(149덴마크 크로네), 20시간 통화/200GB 데이터/무제한 문자메시지(199덴마크 크로네)로 구성돼 있다. 단, LTE는 서비스 되지 않으니 빠른 인터넷을 원한다면 현지 통신사에 가입해야 한다.

전압/플러그

한국과 동일한 220V 플러그를 사용하면 된다.

식수

덴마크 전 지역의 식수는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식료품점이나 마트에서 식수를 구입할 것을 권장하나 현지인들은 수도물도 깨끗하다고 생각하여 마시기도 한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신차의 경우 먼저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모델의 자동차 가격을 비교해 적절한 차종을 결정하고, 차종이 결정되면 관련 자동차 딜러를 접촉해 구입하면 된다.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동차 딜러를 접촉해서 구입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나 가격이 약간 비싸다. CPR 번호가 있어야 자동차 구매가 가능하며 한국과는 달리 대부분 자동차가 수동기어이기 때문에 오토매틱 기어를 구매하려고 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당장 딜러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오더 후 독일 등 해외에서 자동차가 생산돼 수입되기 때문에 딜리버리까지 최소 3개월에서 3개월 반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광고를 통해 직접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면 딜러로부터 구입할 때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반드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을 통해 중고차를 거래하는 www.bilzonen.dk, www.biltorvet.dk 등의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차량가격

덴마크는 부가세가 25%, 자동차 등록세가 수입 가격의 150% (차량 가격에 따라 다소 상이)이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 가격이 우리나라의 약 3배에 달하므로 이를 감안해 정착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한국 면허증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만일에 대비하여 한국 영문면허증 및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 오는 것이 좋다.

덴마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사와 약속을 정해, 건강증서(Health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발급받으면, 하단의 서류를 지참해 Kommune 내 Borgerservice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건강증서 + 여권 사진 1매
- 거주 증명서
- 한국발급 면허증(영문) 혹은 국제면허증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추가로 필기나 실기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2020년부터는 한국면허증을 교환하지 않고, 한국면허증을 대사관을 통해 공증을 받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영문 면허증을 발급받을 경우, 현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덴마크에서 규모가 가장 큰 3개의 은행은 단스케뱅크(Danske Bank)와 노르디아뱅크(Nordea Bank Danmark), 유스케뱅크(Jyske Bank)이다. 세 은행 모두 북유럽을 기점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해외에도 지점을 두고 있다.

덴마크에서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은행은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단스케뱅크이다. 노르디아는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은행들을 1997년 인수합병을 통해 만든 은행이며, 본사는 스톡홀름에 있다. 유스케 뱅크는 수도인 코펜하겐이 아닌 유틀란드 반도에 위치한 실케보그(Silkeborg)라는 도시에 본사를 둔 은행인데, 덴마크 전국의 은행들을 인수하면서 규모를 키워나간 은행이다.

단스케뱅크는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블랙머니 스캔들로 휴먼계좌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졌으며 신규 계좌오픈도 까다로워져 신규계좌 오픈에 많은 시일이 소비되는 편이다.

계좌 개설방법

은행 계좌 개설 시 CPR 번호와, 여권, 직업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CPR 카드를 받기 전까지 Kommune 에서 임시로 발급하는 CPR 번호와 거주지가 표시된 서류가 있으면 대체가 된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 3개월 정도의 단기 체류 시 특수한 업무일 경우도 은행에 따라 개설이 가능하다. 은행 계좌 개설 시 달러 계좌와 덴마크 크로네 계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다.

Dan Card(현금카드) 단말기가 전국적으로 일반화 돼 있으므로 덴마크 크로네 계좌 개설 시 Dan Card와 VISA 겸용 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물품 대금 지불하는데 용이하다. 카드를 신청하면 보통 분기별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청구되는데 보통 분기당 90덴마크 크로네 내외이다. 카드는 보안을 위해 카드가 먼저 발송된 후 2~3일 후에 비밀번호가 담긴 메일을 발송한다. 이 두 개의 메일을 수령하면 은행에 전화를 걸어 카드를 활성화하면 된다.

한편, 은행에 직접 방문해 텔러를 이용할 경우 단스케 뱅크의 경우에는 회당 40덴마크 크로네가 서비스 수수료로 청구되므로 가급적 인터넷 뱅킹이나 ATM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Copenhagen International School(CIS)

도시명	코펜하겐, 노드하운
커리큘럼	CIS는 3세부터 18세까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International Baccalaureate Programmes) 교과과정을 따른다. ◦ The Primary Years Programme: 3세부터 11세의 학생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이며, 기초교육부터 미술, 음악 등을 배우며, Grade 5가 되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 The Middle Years Programme: 11세부터 16세의 학생에 해당되는 교과과정이며, 수학, 과학, 디자인, 미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및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기술과 태도에 대하여 배운다. ◦ The Diploma Programme: 16세부터 18세의 학생에 해당되는 교과과정이며, 언어, 영어, 과학, 인류, 수학을 학습하며, 이론 수업을 듣는다.
학비	Application Fee: 2,500 덴마크 크로네 Registration Fee: 25,000 덴마크 크로네 Administration Fee: 2,000 덴마크 크로네 Grades 1-5: 132,000 덴마크 크로네 / 년 Grades 6-7: 146,000 덴마크 크로네 / 년 Grade 8: 151,000 덴마크 크로네 / 년 Grade 9: 154,000 덴마크 크로네 / 년 Grade 10: 161,000 덴마크 크로네 / 년 Grades 11-12: 185,000 덴마크 크로네 / 년
비고	주소: Levantkaj 4-14, 2150 Nordhavn 전화: +45 39 46 33 00 홈페이지: https://www.copenhageninternational.school/

◦ International School of Hellerup

도시명	헬러럽
커리큘럼	◦ The Primary Years Programme (PYP): 3세부터 12세의 학생에게 해당하는 교과과정이며, 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진행한다. 언어, 수학, 사회학, 과학, 미술, 대인관계에 대한 기초교육이 진행된다. ◦ The Middle Years Programme: 11- 16세 학생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이다. 덴마크어와 영어로 구성된 언어 및 문학 수업, 언어능력향양 수업(프랑스어, 독일어, 덴마크어, EAL), 과학, 수학, 예술을 배운다. ◦ The IB Diploma Programme (DP): 16 - 19세 학생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이다. 해당 학생은 1) 가장 잘하는 언어, 2) 추가적으로 가능한 언어 3) 인문학 및 사회과학 4) 실험 과학 5) 수학 및 시각예술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여 심화된 학습을 하여야 한다.
학비	Kindergarden 1 - 2 : 51,610 덴마크 크로네 / 년 Kindergargen 3 - Grade 5 : 36,910 덴마크 크로네 / 년 Grade 6 - 10 : 38,890 덴마크 크로네 / 년 Grade 11 - 12 : 40,930 덴마크 크로네 / 년
홈페이지	http://www.ish.dk/
비고	주소: Rygaards Alle 131, 2900 Hellerup 전화: +45 70 20 63 68

◦ Rygaards International School(영국계 기독교 학교)

도시명	헬러럽
-----	-----

커리큘럼	○ The Primary School: 4세부터 11세의 학생에 해당되며, 영어, 수학, 과학, 영어에 해당하는 폭넓은 학습을 받는다. 덴마크어 교육은 3단계로 나뉘어진다. ○ The Secondary School: 11세부터 16세까지의 학생에 해당되며, Primary School의 교과과정을 배우는 동시에 영국의 the National Curriculum을 따른다.
학비	Application Fee : 2,000 덴마크 크로네 Enrollment Fee : 1,500 덴마크 크로네 Deposit : 10,000 덴마크 크로네 Grade 1 - Grade 10 : 37,750 덴마크 크로네 / 년
홈페이지	http://rygaards.com/
비고	주소: Bernstorffsvej 54, 2900 Hellerup 전화: +45 39 62 10 53

〈자료원 :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 현지학교

○ Gammel Hellerup Gymnasium (General Upper Secondary School)

도시명	헬러럽
커리큘럼	900여 명의 학생과 100여 명의 교사로 이루어진 학교로 사회학, 인류학, 자연과학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추가 교육비를 통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학비	무상교육
홈페이지	https://www.ghg.dk/international/english/

○ Hellerup Skole

도시명	헬러럽
커리큘럼	어린 학생을 위한 학교인 만큼 기초 학습과 태도에 관한 교육을 하며, 문제 해결 능력 및 창의력 함양에 초점을 둔 교육을 실시한다. 협동과 조사 능력 및 예측 전반에 관한 능력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학비	무상교육
홈페이지	https://hellerupskole.aula.dk/
비고	primary school, 5-16세의 학생을 위한 학교

〈자료원 :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마. 병원

○ Skovhus Private Hospital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Jaegersborgvej 66a, 2800 Kongens Lyngby, Denmark
전화번호	+45 5996 1590
진료과목	일반의학, 정신질환
비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CPR(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 카드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병원을 이용하는 절차는 우선 지정받은 흉닥터로부터 1차 진료를 받은 후 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전문의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흉닥터의 주소와 연락처는 CPR 카드에 표기돼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약 처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Copenhagen Emergency Doctor Service (+45 70 13 00 41)로 연락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 연락처는 지역별로 다르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번호는 1813이다. 응급 상황일 경우는 112에 전화하거나 바로 종합 병원의 응급실로 가면 된다. 매우 응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료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료원 : <https://skovhusprivathospital.dk>>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o Magasin du Nord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Kongens Nytorv 13 1095 Copenhagen
홈페이지	https://www.magasin.dk/
비고	고급 백화점, 디자인 패션, 브랜드 의류, 구두, 속옷, 가방, 보석, 시계, 모자, 스포츠, 여가

o Illum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Oslashstergade 52 1100 Copenhagen
홈페이지	https://illum.dk/
비고	고급 백화점, 디자인 패션, 브랜드 의류, 구두, 속옷, 가방, 보석, 시계, 모자, 스포츠, 여가

o Royal Copenhagen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Amagertorv 6 1160 Copenhagen

홈페이지	https://www.royalcopenhagen.com/dk/da/home
비고	덴마크 고급 식기류 및 자기

◦ Fields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Arne Jacobsens 2300 Copenhagen
홈페이지	https://fields.steenstrom.dk/
비고	대형 쇼핑몰

〈자료원 :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 식품점

◦ Fotex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Kristen Bernikows Gade 2, 1105 Copenhagen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전체 및 생활용품을 취급함.
비고	덴마크 전역에 체인점이 있음.

◦ Netto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Jarmers Pl. 7, 1551 Copenhagen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전체 및 생활용품을 취급함.
비고	덴마크 전역에 체인점이 있음.

◦ Irma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Ostergade 52, 1100 Copenhagen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전체 및 생활용품을 취급함.
비고	덴마크 전역에 체인점이 있음.

〈자료원 :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 SATS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Christians Brygge 25, 1219 Copenhagen
홈페이지	https://www.sats.com
소개	덴마크 전역에 위치한 헬스장

◦ Fitness World

도시명	코펜하겐
주소	Kobmagergade 48, 1150 Copenhagen
홈페이지	https://www.fitnessworld.com/dk2/
소개	덴마크 전역에 위치한 헬스장

〈자료원 :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신년	2023-01-01	2023-01-01
성목요일	2023-04-06	2023-04-06
성금요일	2023-04-07	2023-04-07
부활절 일요일	2023-04-09	2023-04-09
크리스마스	2023-12-26	2023-12-24
대기도일	2023-05-05	2023-05-05
예수 승천일	2023-05-18	2023-05-18
성령강림절	2023-05-29	2023-05-29
헌법제정일	2023-06-05	2023-06-05
부활절 월요일	2023-04-10	2023-04-10

〈자료원 : <https://leaveboard.com/public-holidays/denmark-public-holidays-2022/>〉

10. KOTRA 무역관 안내

○ 코펜하겐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Holbergsgade 14 3rd Fl., DK-1057 Copenhagen K, Denmark
- 전화: (+45) 3312-6658
- 이메일: info@kotra.dk

* 수령자에 KOTRA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배달이 안될 경우 한국처럼 유선으로 수취자를 찾아주지 않고 한국으로 재배송되기 때문에 우편배송 시 무역관에 통보가 꼭 필요하다.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이용 시 (약 15분 소요)
 - 공항에서 코펜하겐 무역관까지 택시요금은 300~350덴마크 크로네(\$50 내외) 정도이며 약 15분 정도면 KOTRA 코펜하겐 무역관에 도착할 수 있다.
- 버스 이용 시 (약 50분 소요)
 - 공항에서 31번 버스를 타고(공항에서 31번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로 15분 소요) Børsen 정류장에 하차 후 국회의사당 반대방향으로 도보로 이동하면 우측에 회색의 큰 빌딩 National Bank를 볼 수 있다. 이 거리가 코펜하겐 무역관이 소재하고 있는 Holbergsgade이며 여기서 약 2~3분 정도 도보로 더 이동하면 1층에 Fuego라는 레스토랑이 있다. 코펜하겐 무역관은 이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다.
- 지하철 이용 시 (약 25분 소요)
 - 공항에서 M2라인을 타고 Kongens Nytorv역에서 하차 후 역 밖으로 나와 Magasin 백화점을 등지고 오른쪽으로 걸어오면 전면에 회색의 큰 빌딩 National Bank를 볼 수 있다. 이 거리가 코펜하겐 무역관이 소재하고 있는 Holbergsgade이며 여기서 약 2~3분 정도 도보로 더 이동하면 1층에 Fuego라는 레스토랑이 있다. 코펜하겐 무역관은 이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